

무역보험 제도안내 01

단기수출보험 | 수출신용보증 | 수입보험 | 환변동보험 | 기타

무역보험 제도안내 01

ksure
한국무역보험공사

www.ksure.or.kr

ksure
한국무역보험공사
KOREA TRADE INSURANCE CORPOR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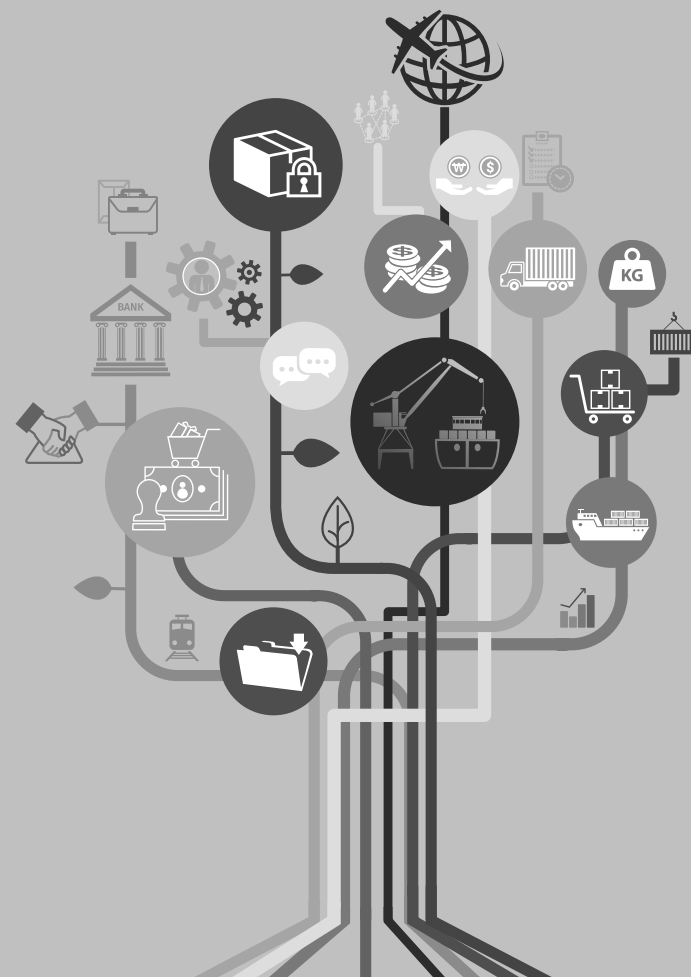


무역보험 제도안내 01

무역보험
제도안내
01

1 _ 한국무역보험공사 소개	05
2 _ 운영 제도 총괄	09
3 _ 사이버영업점	13
4 _ 신용조사 · 평가	17
① 국내기업 신용조사 · 평가	18
② 국외기업 신용조사 · 평가	18
5 _ 단기수출보험	23
① 단기수출보험(선적후)	24
② 단기수출보험(중소중견Plus+)	37
③ 단기수출보험(중소중견Plus+) 단체보험	42
④ 단기수출보험(중소Plus+) 수출안전망	45
⑤ 단기수출보험(농수산물패키지)	46
⑥ 단기수출보험(포페이팅)	49
⑦ 단기수출보험(수출채권유동화)	55
6 _ 수출신용보증	63
① 수출신용보증(선적전)	64
② 수출신용보증(선적후)	69
③ 수출신용보증(Nego)	74
7 _ 수입보험	79
① 수입보험(수입자용)	80
② 수입보험(금융기관용)	84
8 _ 환변동보험	91
9 _ 해외채권 추심대행 서비스	99
10_ 중소기업 우대 제도	103
11_ 보험(보증)료 지원사업 안내	109
12_ 용어 정리	113
13_ 부서 안내	117

한국무역보험공사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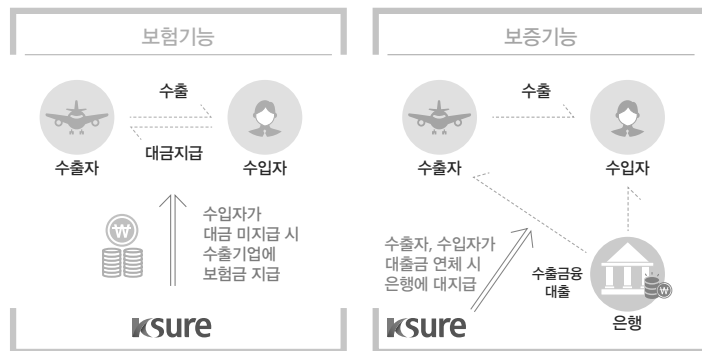


1 한국무역보험공사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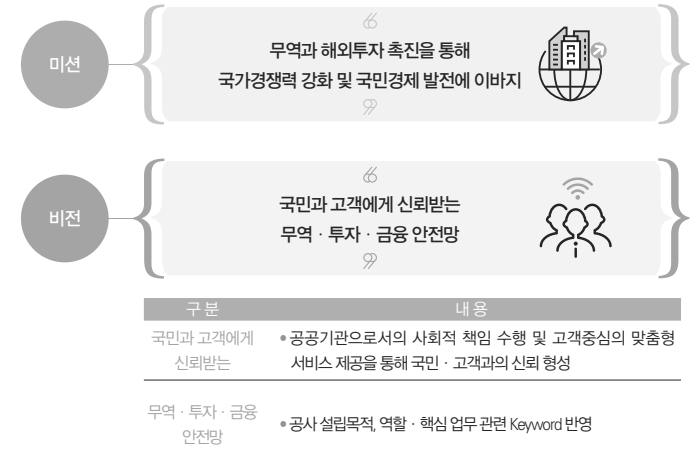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우리나라 수출·수입보험 제도를 전담 운영하는 정부출연기관으로서 무역과 해외투자 촉진을 위해 다양한 보험·보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기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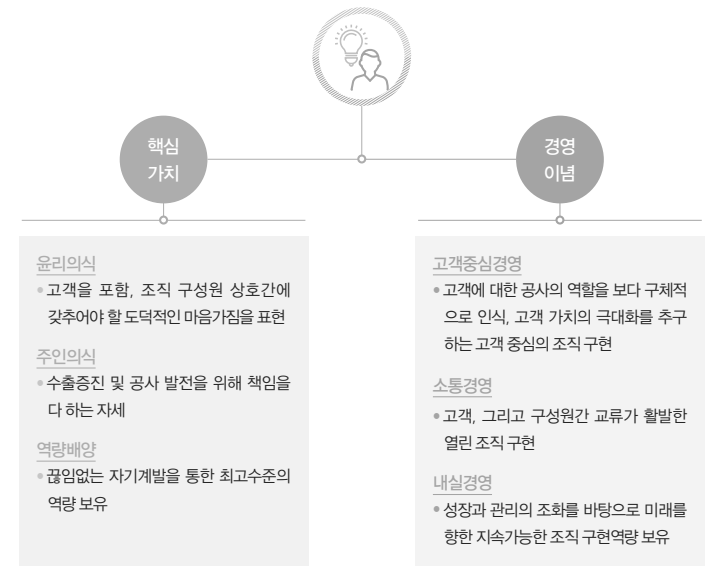
- **무역보험 · 신용보증 종목 운영**
상품 및 자본재 수출, 수입, 해외건설 · 투자, 환위험 관리, 서비스 수출, 기타 대외거래에서 발생하는 위험 담보
- **신용정보 서비스 및 해외채권 추심대행 서비스**
국외기업 신용조사 및 신용정보 관리 등의 신용정보 서비스와 해외 미수채권에 대한 회수 대행 등 채권추심 서비스 제공
- **무역보험기금의 운용**
정부가 출연한 무역보험기금의 안정적 운용을 통한 무역보험 사업기반 확보
-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
안정적인 무역과 대외투자를 견인,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



미션과 비전



● 핵심가치 및 경영이념



- | | |
|---------------|-----------------------|
| 1968. 12. 31. | 수출보험법 제정·공포 |
| 1992. 7. 7. | 한국수출보험공사 설립 |
| 1994. 8. 3. | 단가수출보험 수출신용보증 도입 |
| 2006. 12. 26. | 해외사업금융보험 도입 |
| 2010. 7. 6. | 수입보험 도입 |
| 2010. 7. 7. | 한국무역보험공사(K-SURE)로 재출범 |

조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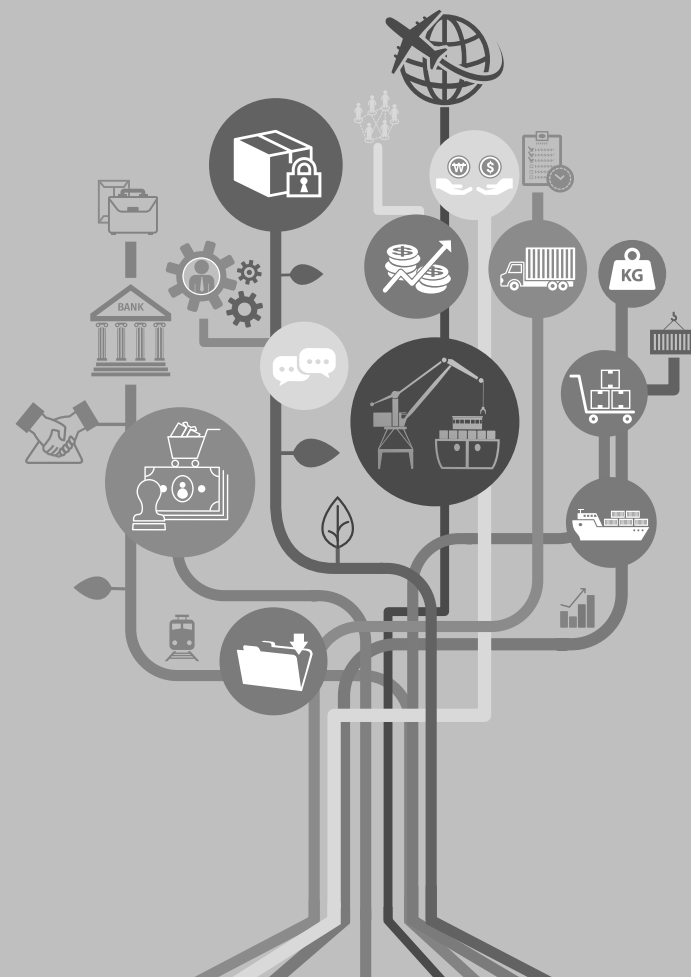


중앙, 강남, 구로디지털, 경기남부, 경기북부,
인천, 대전세종충남, 충북, 강원, 부산, 대구경북,
울산, 경남, 전북, 광주전남, 제주, 시화(출),
천안(출)

LA, 북경, 상파울루, 파리, 상해, 호치민, 뉴욕,
자카르타, 뉴델리, 파나마, 모스크바, 두바이,
동경, 멕시코시티, 테헤란, 성도, 싱가포르

PART

운영 제도 총괄



2 운영 제도 총괄

운영 제도 개요

◎ 보험 및 수출신용보증

수입자의 계약 파기, 파산, 대금지급지연 또는 거절 등의 신용위험과 수입국에서의 전쟁, 내란 또는 환거래 제한 등의 비상위험으로 수출자 또는 수출금융을 제공한 금융기관이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

- ☑ 무역보험은 궁극적으로 우리나라의 수출을 촉진하고 진흥하기 위한 수출지원제도입니다.
- ☑ 무역보험을 통해 수출자는 수출대금을 받지 못하여 발생한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위험성이 있는 외상거래나 신규 수입자의 적극적인 발굴을 통한 신시장 개척 및 시장다변화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 ☑ 금융기관은 담보능력이 부족한 수출업체에 대하여 K-SURE의 보험증권이나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다양한 금융거래 지원이 가능합니다.

◎ 수입보험

원유, 가스 등 주요 전략물자 등을 수입하는 경우 국내 수입기업의 선금 미회수 위험을 담보하거나 금융기관의 국내기업에 대한 수입자금 대출 지원이 원활하도록 지원하는 제도

〈 무역보험이 담보하는 위험 〉

구 분	내 용
비상위험 (political risk)	수입국의 전쟁, 내란, 환거래 제한, 모라토리움 등으로 인해 수출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위험
신용위험 (commercial risk)	수입자의 지급불능, 지급거절, 지급지체, 파산 등으로 수출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위험

운영 제도 종류

단기수출보험, 중장기수출보험, 환변동보험 등 보험제도와 담보력이 취약한 중소수출기업의 금융기관 앞 융자금 상환을 보증하는 수출신용보증제도 운영

1) 단기성 종목

- 결제기간 2년 이내의 수출거래 또는 수입거래(대상품목 제한) 대상
- 단기수출보험, 수출신용보증(선적전, 선적후, Nego), 중소중견Plus+보험, 수입보험 등

2) 중장기성 종목

- 결제기간 2년 초과 수출거래 대상
- 중장기수출보험, 해외사업금융보험, 해외투자보험, 해외공사보험, 수출보증보험, 이자율 변동보험, 서비스종합보험 등

3) 기타

- 국외기업 신용조사 서비스, 환변동보험, 해외채권 추심대행 서비스, K-SURE 컨설팅 서비스 등

〈 주요 종목 안내 〉

	주요 종목	주요 내용
단기성보험	단기수출보험(선적후)	• 외상 수출 후 수출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의 손실을 보상(24p)
	단기수출보험 (중소중견Plus+)	• 수출대금 미회수로 인한 손실이 발생 시 책임금액 범위 내에서 보상하는 제도(36p)
	수입보험	• 선금 미회수위험 또는 자원 수입에 필요한 자금 대출 후 대출금 미회수 시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79p)
수출신용보증	수출신용보증(선적전)	• 수출기업이 선적 이전 물품을 제조, 가공, 조달할 수 있도록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을 때 보증하는 제도(64p)
	수출신용보증(선적후)	• 수출기업이 선적 이후 수출대금을 조기에 유동화 할 수 있도록 보증하는 제도(69p)
	환변동보험	• 수출거래를 통해 외화를 획득·지급하는 과정에서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을 헤지하는 제도(91p)
중장기성보험*	중장기수출보험	• 중장기 수출거래에서 금융기관의 대출원리금 회수불능 위험을 보장하는 제도
	해외사업금융보험	• 해외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공여하는 금융계약을 체결 후 대출원리금 미상환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
	해외투자보험	• 해외 자원 개발 등을 위해 투자한 주식, 대출금의 미회수 위험을 담보하는 제도
	서비스종합보험	• 서비스 거래 수출 후 대금 미회수 시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
	수출보증보험	• 금융기관이 보증서 발행 후 수입자로부터 보증채무 이행청구를 받아 이행함으로써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

* 중장기성보험은 「무역보험 제도안내 02」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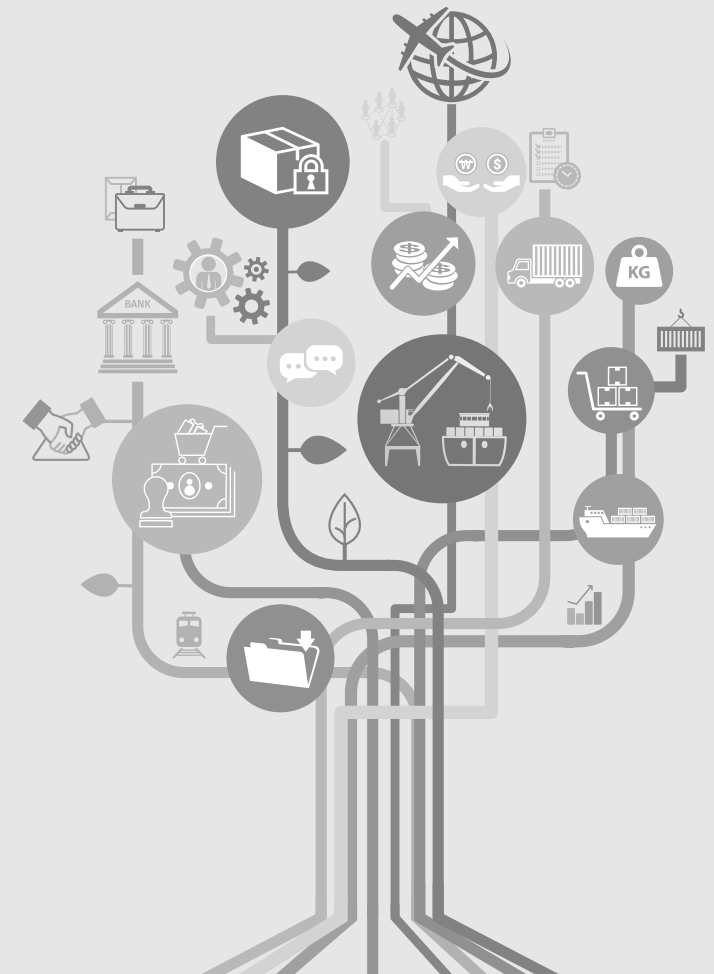
거래단계별
지원체계

국내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신용조사에서 수출대금 회수까지 전과정에 대한 지원체계 구축

수출단계	수출자 · 금융기관 노출위험/문제	K-SURE 지원제도
수출상담 및 수출계약	• 불안한 수입국 사정 및 수입자의 신용도 문제 • 비상위험, 수입자 파산 등으로 인한 수출 불능 위험 • P.Bond 등 보증서를 발급한 금융기관의 보증채무 이행 위험	• 국가 정보 제공 • 국외기업 신용조사 서비스 • 단기수출보험(선적전) • 중장기수출보험(선적전) • 수출보증보험
수출 이행 준비	• 원자재 및 완제품 조달, 수출물품 생산 등 수출 이행을 위한 자금조달 문제	• 수출신용보증(선적전)
수출금융 이용	• 수출 이행 및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출 금융 및 해외사업자금 조달 문제	• 단기수출보험(구매자신용) • 중장기수출보험(구매자신용) • 해외사업금융보험
선적 이후 단계	• 수출 후 수입자로부터 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위험 • 외상 수출 후 대금 회수기간 동안의 자금 회전 문제 • 환율변동으로 인한 환손실 위험	• 단기수출보험(선적후, 중소중견Plus+ 보험, 단체보험, 수출안전망보험) • 중장기수출보험(공급자신용) • 해외공사보험 • 서비스종합보험 • 수출신용보증(선적후, Nego) • 단기수출보험(수출채권유동화) • 단기수출보험(본지사금융) • 환변동보험
손실발생	• 수출채권 미회수로 인한 문제	• 부보전에 대한 보상(손실보전) • 미부보전에 대한 채권추심대행 서비스

PART
3

사이버영업점





사이버영업점

사이버영업점이란?

- 국외기업 신용조사, 무역보험 가입 등 무역보험과 관련한 제반 서비스를 인터넷상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K-SURE가 제공하는 사이버상의 영업점

접속경로 —■ 공사홈페이지 —■ 사이버영업점

◆사이버영업점의 주요 서비스

국외기업 신용조사, 신용조사 수수료 조회, 무역보험 청약 및 증권 발급, 수출통지(대출통지), 보험료 조회, 사고 발생 통지 및 보험금 청구요청 등록, 사고접수 조회, 보험금 지급내역 조회, 환율 · 국가 · 산업동향 정보 등

회원 가입 절차

- 사이버영업점을 이용하기 위해 '회원사 및 마스터대표사용자' 가입이 필요하며, 마스터대표사용자 이외의 사용자를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사용자' 추가 가입 필요

| 1단계(필수) | 회원사 및 마스터대표사용자 가입

신청 —■ 홈페이지 —■ 사이버영업점 —■ 회원가입 신청(회원사 및 마스터대표사용자 동시 가입) —■ 신청서류 업로드 —■ 공사 승인 후 가입 완료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마스터대표사용자 지정(변경)신청서

■ 회원사 가입 승인 시 마스터대표사용자에게 문자메시지(SMS) 발송

| 2단계(선택) | 일반사용자 가입

신청 —■ 홈페이지 —■ 사이버영업점 —■ 일반사용자 가입 신청 —■ 마스터대표사용자 승인 후 가입 완료

◆사이버영업점 아이디/패스워드 용도

☑ 회원사 아이디 : 사용자 가입 시 소속기업 인증

☑ 사용자 아이디/패스워드 : 사이버영업점 로그인

마스터대표 사용자

- 회원사의 모든 사용자들을 관리할 수 있는 책임과 권한을 가지며, 무역보험 업무를 책임있게 담당하는 실무자로 지정

* 마스터대표사용자는 K-SURE에서 통지하는 모든 이메일 수신

- 회원사는 자신의 권한 및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마스터대표사용자 및 일반사용자가 사이버영업점에서 하는 모든 행위는 회원사의 행위로 간주됨

◆마스터대표사용자 권한

☑ 회원사의 일반사용자 가입 승인 및 사용권한 설정 (조회권한, 등록권한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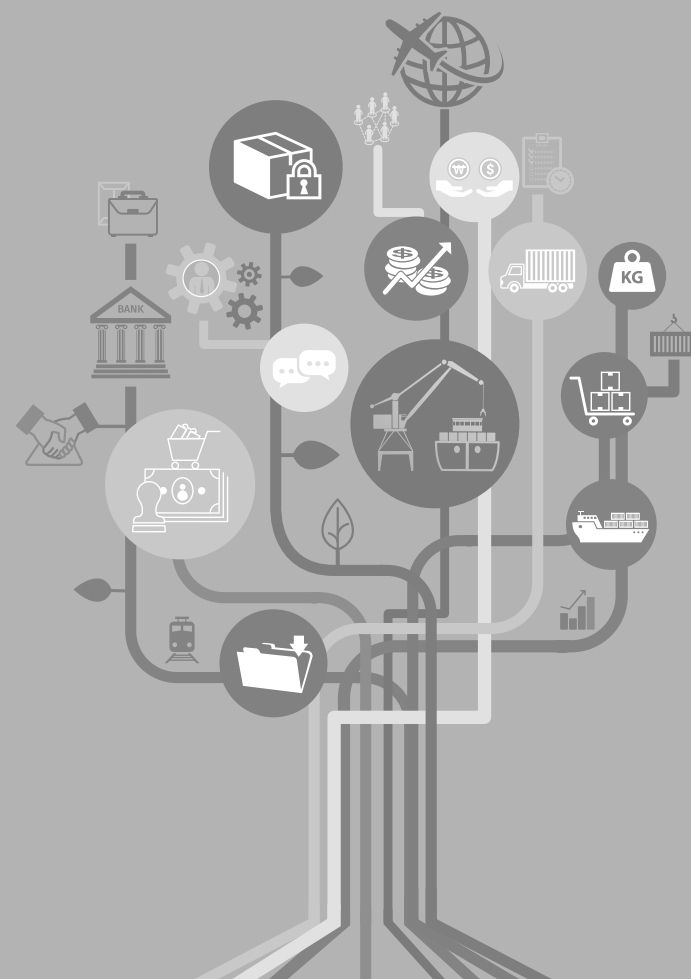
☑ 일반사용자 탈퇴 처리(사이버영업점 ⇒ 사용자 정보 ⇒ 사용권한 설정)

◆마스터대표사용자 변경

'마스터대표사용자 지정(변경) 신청서' 팩스 전송 (고객센터 02-6234-1407)

신청 및 서류 —■ 홈페이지 —■ 사이버영업점 —■ My Management —■ 사용자정보 —■ 마스터대표 변경 (변경 신청 & 신청서 작성하여 고객센터 앞 송부)

신용조사 · 평가



4

신용조사 · 평가

1. 국내기업 신용조사 · 평가

- 영업부서로 아래 서류를 제출하고, 홈페이지에 재무제표 업로드

서류 → (보증종목 이용 시) ①, ②, ③, ④
→ (보험종목만 이용 시) ①, ②, ③

- ① 국내기업 신용조사 의뢰서(공통)
-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 ③ 고객정보동의서(법인기업용 또는 개인기업용)
- ④ 고객정보동의서(순수개인용)

재무제표 업로드 → 홈페이지 → 증빙자료 온라인 제출

2. 국외기업 신용조사 · 평가

제도 개요

- K-SURE의 해외지사 및 전 세계 신용조사기관을 통해 정보를 조사한 후 신청인에게 신용조사 보고서를 제공하는 서비스

- ▶ 무역보험은 국외기업의 신용위험 및 비상위험을 담보하는 제도로써 국외기업 신용평가는 무역보험 이용을 위한 필수 절차임
- ▶ 단, 중소중견Plus+보험, 수출신용보증(선적전), 환변동보험 등 일부 종목은 국외기업 신용조사 불필요

- ☑ 공사는 고객의 원활한 대외거래를 지원하기 위해 상당 규모의 조사비용을 자체적으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 ☑ 현지 신용조사는 평균 2~3주가 소요되며, 현지 사정에 따라 조사거절, 불가, 지연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일정상 여유있게 신청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 조사 신청 시 가능한 상세하게 수입자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신속한 조사에 도움이 됩니다.
- ☑ 조사 대상인 국외기업으로부터 조사에 대한 협조를 미리 받지 못하신 경우에는 조사 신청 시 그 사실을 알려주셔야 합니다.
☞ 국외기업 조사협조 '무'로 표시
- ☑ 공사의 신용조사 서비스는 신청기업이 의뢰한 수입자의 신용도를 조사, 평가하는 서비스로서 해당 수입자 명의로 체결한 수출입 계약의 진정성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서비스 구조



*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수료 납부는 월 1회 통합하여 진행

이용절차

1 국외기업 신용조사 신청 (이용기업 → K-SURE)

- ▶ K-SURE DB에 수입자 정보가 없는 경우 수입자 신용조사 의뢰 (사이버영업점)
- ⇒ 수입자의 상호, 연락처, 주소, 담당자 등 정확한 정보 입력 필요



2 해외 신용조사기관 앞 조사 의뢰 및 조사보고서 접수 (K-SURE ↔ 해외기관)

- ▶ 약 2~3주간 현지 신용조사 후 조사보고서 접수



3 신용평가 실시 및 보고서 발송 (K-SURE → 이용기업)

- ▶ 신용평가 실시
- ▶ 요약보고서(등급 포함) 자동 발송(신청자 이메일)
- ⇒ Full Report는 사이버영업점에서 직접 조회



4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수료 청구 (K-SURE → 이용기업)

- ▶ 조사보고서 제공 후 익월 1일에 세금계산서 일괄 청구(마스터대표사용자 이메일)



5 수수료 납부(후불제) (이용기업 → K-SURE)

- ▶ 조사보고서 제공 후 익월 27일까지 일괄 납부
- ▶ 세금계산서에 안내된 가상계좌로 납부

신용조사
보고서 종류

보고서 종류	정보제공 내역	목 적
요약보고서	재무정보, 주주현황, 관계회사 등 기업정보, 국가정보, 신용평가결과(등급) 등	정보 수집 및 무역보험 이용을 위한 등급 책정
Full Report	공사 요약보고서, 해외조사기관 조사보고서 원본(영문)	상세 정보 수집

* 보고서 양식은 [홈페이지] ⇒ 지원사업 ⇒ 국외기업 신용조사 서비스 ⇒ 제도 개요 ⇒ 샘플보기에서 확인 가능

국가별
신용조사기관
및 Full Report
제공 여부

	지 역	조사기관	Full Report 제공 여부
아시아	중국	EXPERIAN Ease Credit	O
	태국	INRA	O
	말레이시아	BASIS	O
	베트남	VCJSC	O
	인도, 미얀마, 캄보디아,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네팔, 부탄, 스리랑카	UCS	O
	일본, 홍콩,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기타 아시아 국가	D&B	X
미주	미국, 캐나다, 브라질, 아르헨티나, 멕시코, 콜롬비아, 에콰도르	D&B	X
	페루 포함 기타 중남미	DRR/CRLA	O
대양주	대양주 국가	CCR	O
서유럽	영국, 아일랜드	GRAYDON D&B	X
	독일	BURGEL	X
	기타 서유럽국가	D&B	X
동유럽	동유럽국가	IGK	O
CIS	우크라이나	Antares	O
	기타 CIS국가	IGK	O
중동 아프리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나이지리아, 남아공, 우간다, 기타 아프리카 국가	D&B	X
	터키	DTB	O
	이집트, 수단, 알제리, 리비아, 모로코, 튀니지, 기타 중동 국가	RIME	O

신용조사 보고서
조회방법

신청방법	내 용	상세설명	소요시간
기존자료 구매	기존 보고서 구매	6개월 이내 조사된 기존 보고서가 있는 경우	당일
신규 신청	신규 조사 진행	상기 이외 또는 신규 조사 희망시	통상 3주

▷ 신용조사 완료 시, 신청자 이메일로 요약보고서가 발송되며, 사이버영업점에서 요약보고서 및 Full Report 조회 가능

신용조사 수수료
및 납부방법

◎ 신용조사 수수료

보고서 종류	기업규모	일 반	재무제표 미비	신용조사 불가자 또는 장기소요(40일 초과)
요약보고서	중소중견기업	33,000원	22,000원	면제
	대기업	66,000원		
Full Report	중소중견기업	49,500원	33,000원	
	대기업	99,000원		

* VAT 포함 가격

☑ 공사는 고객의 원활한 대외거래를 지원하기 위해 상당 규모의 조사비용을 자체적으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 수수료 청구 및 납부방법

수납방식	청구 및 세금계산서 발행	납 부
후불제	당월 중 조사완료건 전체에 대한 수수료 일괄 청구 및 세금계산서 발행	일괄 납부 * 조사 완료일 익월 27일
	* 조사 완료일 익월 1일 * 마스터대표사용자에게 이메일로 발송되며, 모든 사용자가 사이버영업점에서 조회 가능	

5 단기수출보험

1. 단기수출보험(선적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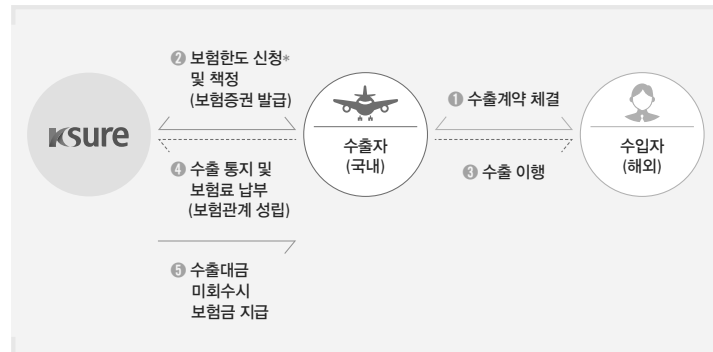
제도 개요

- 수출자가 수출대금 결제기간이 2년 이내의 수출계약을 체결하고 물품(용역 포함, 이하 동일)을 수출하였으나 비상위험 또는 신용위험으로 인하여 수출대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수출기업이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

◆ 단기수출보험의 주요 기능

- 수출시 발생하는 수출불능위험 및 수출대금 미회수위험 제거
- 해외시장개척 및 수출 선도 기능
- 수출자의 금융조달 시 담보제공능력 부족 해소
- 금융기관의 수출금융 대출 시 대출금 미회수위험 제거
- 단기수출보험 세부 종류에 따라 상기 기능에 차이가 있습니다.

상품구조



* 보험한도 신청 전 수입자 신용조사·평가 필요

담보하는 위험 및 대상거래

◎ 담보하는 위험

구분	내용
비상위험 (political risk)	수입국의 전쟁, 내란, 환거래제한, 모라토리움 등으로 인해 수출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위험
신용위험 (commercial risk)	수입자의 지급불능, 지급거절, 지급지체, 파산 등으로 수출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위험

◎ 대상거래 : 결제기간 2년 이내의 일반수출, 위탁가공무역, 중계무역, 재판매 거래

구분	내용
일반수출	국내에서 외국으로의 수출을 말하며, 국내에서 생산·가공 또는 집하된 물품을 수출하는 거래(우리나라 선박에 의하여 외국에서 채취 또는 포획한 수산물을 수출하는 거래 포함)
위탁가공무역	국내기업의 해외현지법인이 생산·가공한 물품 또는 국내기업이 위탁하여 외국에서 가공한 물품을 수출하는 거래
중계무역	수출을 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통관하지 않고 제3국으로 수출하는 거래
재판매	수출자가 해외지사(현지법인 포함)에 물품을 수출하고, 동 해외지사가 당해 물품을 현지 또는 제3국에 재판매하는 거래

이용요건 및 보험증권 유효기간

◎ 이용요건

- (수출자) 국내에 주소를 둔 수출기업으로 공사 신용등급 F급 이상
- (수입자) 공사 국별인수방침 인수제한국에 소재하지 않는 수입자로, 공사 신용등급 F급 이상

- 연간 수출실적(부보대상거래) US\$2백만 이상인 수출기업은 보험료 할인 등 우대혜택이 많은 포괄보험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보험증권 유효기간

- (개별보험 및 포괄보험(건별통지방식)) 최종 수출통지일 또는 한도책정일로부터 1년

- 회전한도 보험증권의 경우, 수출거래가 지속되어 보험을 계속 이용한다면 보험증권(한도) 유효기간이 계속 연장됩니다.

- (포괄보험(총액통지방식)) 한도책정일로부터 총액통지대상기간 종료일까지 6개월 경과한 한도 중 수출통지 내역이 없는 경우 보험한도 자동 소멸

주요 계약사항

구분	내용						
보험계약자	수출자						
보험가액	수출대금						
부보율	구분	개별보험			포괄보험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일반수출, 위탁가공무역	100%	975%	95%	100%	975%	95%
	중계무역	수입금액/수출금액 비율 이내			(신용장)90%, (무신용장)85%		
	재판매	95%					
▷ 부보율은 공사의 국별인수방침 또는 개별 고지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보험금액	보험가액 × 부보율						
지급보험금	(손실액 - 면책대상손실) × 부보율						
보험료	보험금액 × 보험요율						

◆ 단기수출보험(선적후) 운영방식

- ✓ 단기수출보험(선적후)는 **개별보험**, **포괄보험**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 개별보험 이용 시 보험계약자는 위험관리가 필요한 거래를 선택적으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포괄보험 이용 시에는 상당 규모의 보험료 할인혜택을 향유할 수 있습니다.
- ✓ 또한 이용절차를 간소화하고 보험료를 낮은 **중소중견Plus+보험**, **단체보험** 등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 37p 중소중견Plus+보험, 42p 단체보험 참고

◎ 개별보험 vs 포괄보험

– 개별보험 : 수출자가 수입자 앞 수출거래에 대하여 건별로 선택하여 보험에 가입

개별보험

수출자가 수입자 앞 수출거래에 대하여 건별로 선택하여 보험에 가입

VS

포괄보험

사전에 수출자와 K-SURE가 포괄보험 특약을 체결하여 부보대상 수출거래의 범위를 정한 후 대상거래 전체를 보험에 가입

구분	개별보험	포괄보험
가입방식	수출거래건별 보험 가입 • 건별 수출통지를 통해 보험 가입	일정 범위의 대상거래를 정한 후 대상거래 전체를 보험 가입 • 월 1회 또는 연 1회 수출통지를 통해 보험 가입
대상거래	결제기간 2년 이내 수출거래	결제기간 180일 이내 수출거래
한도운영방식	인수한도* • 수출 통지금액이 인수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보험 가입 불가	보상한도* • 수출 통지금액이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보험 가입이 가능하나 보상한도 범위 내에서 보험금 지급
장점 (보험계약자)	• 수출거래건별 선택적 보험 가입	• 고위험거래에 대한 보험 가입 용이 • 대상거래 전체 위험관리 가능 • 저렴한 보험료 수준 • 수출통지(월 또는 연 1회) 및 보험료 납부 (월 1회) 등 절차 간편
단점 (보험계약자)	• 고위험거래 가입 곤란 • 포괄보험 대비 높은 보험료 수준 • 수출건별 통지 및 보험료 납부 필요	• 저위험거래 가입 의무

* 「12. 용어 정리」 참고

◎ 포괄보험 수출통지 방식(건별통지 vs 총액통지)

구분	건별통지방식	총액통지방식
수출통지	[월 1회] • 수출건별 통지 • 선적 후 익월 20일까지	[연 1회] • 수입자(은행)별 수출금액(대상거래) 합산 통지 • 익년 1월 중 전년도 수출금액 통지
보험관계 성립	수출이행 후 수출통지 시 보험관계 성립	수출이행 시 보험관계 성립
잠정 보상한도*	자동 적용	별도 신청 필요
보상한도 소멸	한도책정 후 또는 최종 수출통지 후 1년 간 수출통지 없는 경우 한도 소멸	한도책정 후 6개월 경과한 한도 중 수출통지 없는 경우 한도 소멸
보험료	보험료 매월 납부 (수출일 익월 10일까지)	예상 보험료 매월 납부 (수출통지 후 연간보험료 확정 및 정산)

* 보상한도가 책정되지 않은 경우 한도 책정 시까지 잠정적으로 적용하는 한도로서 신용장방식 U\$40만, 무신용장 U\$20만 적용(단, 국별인수방침상 제한이 있는 경우, 선적 당시 수입자 등급이 G, R급 이거나 L/C은행이 인수부적격인 경우는 적용 배제)

◎ 회전한도 vs 건별한도

구분	회전한도	건별한도
내용	보험관계 성립 후 수출대금이 결제되면 동 결제금액 만큼 한도가 되살아나는 방식	• 하나 또는 수개의 수출계약서(또는 신용장) 건별로 부여되는 일회성 한도 • 중계무역 수출거래 또는 국별인수방침에 따른 건별승낙국가 앞 수출거래 등에 적용

이용절차

❏ 보험한도 책정 단계 (수출 이행 전)

① 보험 이용 상담

▶ 보험 이용 가능 여부, 절차 등 상담(고객센터 또는 영업담당자)



② 신용조사 및 평가 (수출기업 → K-SURE)

▶ (수입자) K-SURE DB에 수입자정보가 없는 경우 수입자 신용조사 의뢰
신청 — 사이버영업점 — 국외기업신용조사

▶ (수출자) 신청서류 제출 (영업부서) 및 최근 3년 재무제표 업로드(홈페이지)
서류 — 홈페이지 — 정보광장 — 신청서류 — 신용조사 관련



③ 보험한도 신청 (수출기업 → K-SURE)

▶ 수입자별 보험한도 신청
신청 — 사이버영업점 — 단기성보험 — 한도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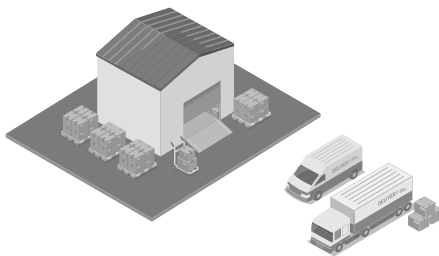
④ 보험한도 심사 및 책정 (K-SURE → 수출기업)

▶ 신청기업 및 수입자 신용도, 예상 거래규모, 결제기간 등 결제조건 등을 고려하여 수입자별 보험한도 책정(자동 또는 수동 책정)



⑤ 보험증권 발급 (수출기업 ↔ K-SURE)

▶ 보험한도 책정 시 '한도책정통보문' 자동 발송
 ▶ '보험증권'은 사이버영업점에서 직접 발급 가능



❏ 보험관계 성립 단계 (수출 이행 후)

⑥ 수출통지 및 보험계약 체결 (수출기업 → K-SURE)

▶ 수출이행 후 수출통지

통지 — 사이버영업점 — 단기성보험 — 통지 — 수출통지 등록

구분	수출통지 기한
개별보험	수출(선적) 후 10영업일 이내
포괄보험 건별통지방식	수출(선적) 익월 20일 이내
포괄보험 총액통지방식	익년 1월

▶ 보험관계 성립여부 확인 필요

▷ 통지 기한 경과, 수입자 등급 불량 등 반송사유에 해당되는 수출통지건은 반송 처리됨 (보험관계 미성립에 유의)



⑦ 보험료 납부 및 보험계약 체결 완료 (수출기업 → K-SURE)

▶ 수출기업은 수출물품을 선적한 후 사이버영업점에서 수출통지

구분	보험료 납부 기한
개별보험	수출(선적) 익월 25일
포괄보험 건별통지방식	수출(선적) 익월 10일
포괄보험 총액통지방식	매월 10일(익년 3월에 연간 확정보험료 정산)



⑧ 수출대금 결제통지 (수출기업 → K-SURE)

▶ 수출기업은 대금결제 시 결제통지(결제통지액 만큼 보험한도 복원)

통지 — 사이버영업점 — 단기성보험 — 통지 — 결제통지 등록



❏ 대금미결제 시 보상 단계

⑨ 사고발생 통지 (수출기업 → K-SURE)

▶ 수출대금이 결제되지 않은 경우, 결제기일로부터 1월 이내에 사고발생 통지

서류 — 홈페이지 — 정보광장 — 신청서류 — 사고접수 및 보상관련**접수** — ① 사이버영업점 사고발생 통지 등록, 또는 ② 본사 국외보상채권부 지역별 담당자 앞 서류 제출

⑩ 사고조사 (K-SURE)

▶ 사고원인 및 수출자 귀책여부 판정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



11 보험금 청구 및 보험금 지급 (수출기업 ↔ K-SURE)

- ▶ 수출자의 귀책여부 심사 후 보험료 지급여부 결정
- ▶ 보험금 청구일로부터 2개월 이내 보험금 지급

접수 — ① 사이버영업점 보험금 청구 등록, 또는 ② 본사 국외보상채권부 지역별 담당자 앞 서류 제출

❖ K-SURE가 보상판정에 필요한 서류 제출을 요구한 경우 자료제출 요청일부터 자료 제출일까지의 기간만큼 보험금 지급기한이 연장됩니다.

제도운영예시

◎ 한도 책정 및 통보

- 신용조사 완료 후 이용에 제한사항이 없는 수입자에 대하여 보상한도 U\$20만 요청
- 수출자가 사이버영업점을 통해 신청한 U\$20만 인수한도 책정 후 한도책정통보문 발송

◎ 보험관계 성립

- 수출자는 U\$10만 선적 후 10영업일 이내 사이버영업점을 통해 U\$10만 수출통지
- 수출통지일은 수출일로부터 보험관계가 성립됨(단, 통지 지연, 인수한도 초과, 수출자 또는 수입자 등급 제한 등의 사유로 보험관계가 성립되지 않은 수출통지일은 반송됨)

구분	책임금액	보험료	비고
비상 및 신용위험	U\$10만	75만원	U\$10만 × @1,000 × 0.75%

※ 환율 @1,000원, 보험요율 0.75% 적용(D급 수입자, 결제기간 90일, 수출자 중소기업 및 유망기업, 개별보험 가정)

◎ 보험료 납부

- 수출한 다음달 25일까지 보험료 75만원 납부

◎ 결제만기 도래 시

- (수출대금 입금) 사이버영업점을 통해 결제통지 등록으로 보험관계 종결
- (수출대금 미입금) 만기일로부터 1개월 이내 사고발생 통지, 만기일로부터 2개월 이후 보험금 지급청구, 보험금 지급청구일로부터 2개월 이내 보험금 지급

보험료

◎ (무신용장 방식) 결제기간이 짧을수록, 수입자의 신용등급이 우수할수록 저렴

▶ | 예시 | 수입자 D급, 결제기간 90일, 수출자 중소기업 및 유망기업 기준 개별보험 0.75%

◎ (신용장 방식) 결제기간이 짧을수록, 개설은행 소재국의 국별등급이 우수할수록 저렴

주요 면책사유 및 면책사례

▶ | 예시 | 국가등급 4등급, 결제기간 90일, 수출자 중소기업 및 유망기업 기준 개별보험 0.29%

❖ 각종 지원정책, 수출자의 손해율 등에 따른 할인 · 할증률 등으로 최종요율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이하 타 종목 보험료/보증료에 대해서도 동일)

◆ 주요 면책사유(보상받을 수 없는 사유)

❖ 연속수출로 인한 손실

- 수출건에 대해 결제일이 도래하였으나 수입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경우 약관은 향후 수출건에 대한 대금결제능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
- 즉, 수출자가 동일한 수입자에게 계속적으로 수출하는 경우, 이전 선적건의 수출대금이 결제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까지 결제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수출한 거래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음

❖ 보험계약자(수출자), 보험계약자의 대리인이나 피사용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

- 물품하자, 선적기일 미준수, 계약조건 위반 등 수출계약 이행과정에서 수출자의 귀책이 있는 경우

❖ 물품의 멸실, 훼손 또는 기타 물품에 대해 발생한 손실

- 운송과정에서 발생한 물품 관련 손실은 보상대상에서 제외됨(적화보험 활용할 것)

❖ 보험계약자가 법령을 위반하여 취득한 채권에 대해 발생한 손실

❖ 수출거래가 아래의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

- 신용장방식 수출거래에서 신용장조건으로 명시된 서류가 당해 신용장조건에 일치하더라도 그와 별도로 신용장개설은행의 대금지급책임이 면제 또는 경감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 무신용장방식 수출거래에서 수출계약 등에 의하여 수출계약 상대방의 대금지급책임을 면제 또는 경감한다는 내용을 약정하고 있는 경우

❖ 보험계약자가 약관상 K-SURE에 알려야 할 고지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발생한 손실

- 보험계약자는 보험한도 신청 및 수출통지 시에 공사가 서면으로 요구한 사항 및 기타 손실을 입을 우려가 있는 중요한 사실을 공사에 알려야 함

❖ 인수한도를 책정 받고 수출을 하였으나 수출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 기타 조사에 협조할 의무 등 약관상 수출자의 의무사항을 위반함으로써 발생한 손실

◆ 주요 면책사례

사례 ① | 연속수출

단기수출보험 이용업체 A사는 미국 수입자 B사 앞 의류를 수출하기 위해 인수한도 U\$1,000천을 책정 받은 후 U\$1,000천만큼 무신용장방식으로 수출을 이행하고 전액 수출보험에 가입하였다.

이후 수입자의 자금사정 악화로 아래와 같이 U\$650천에 대하여 지급지체가 발생하여 수출자는 '18. 11. 1자 공사 앞 사고통지*하였다.

1번 선적건을 보면 만기일이 '18. 5. 14.이므로 약관에 의거 30일이 경과한 '18. 6. 14.부터 결제일 전일인 '18. 10. 29.까지 대금이 미결제상태이므로 이 기간동안 추가로 수출한 거래에서 발생한 손실은 연속수출에 해당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즉, 수출자가 사고발생 통지한 3, 4, 5번 선적건 중 3번 선적건은 선적일이 '18. 5. 15.이므로 연속수출에 해당되지 않아 보험금을 지급하였으나, 4, 5번 선적건은 '18. 6. 14.~'18. 10. 29. 동안 선적되었으므로 전액 면책처분하였다.

구 분	수출금액	선적일	만기일	결제일	결제금액	미결제액	비 고
1	U\$100천	'18. 3. 15.	'18. 5. 14.	'18. 10. 30.	U\$100천	-	-
2	U\$250천	'18. 4. 15.	'18. 6. 14.	'18. 10. 30.	U\$250천	-	-
3	U\$300천	'18. 5. 15.	'18. 7. 14.	-	-	U\$300천	보상
4	U\$150천	'18. 6. 15.	'18. 8. 14.	-	-	U\$150천	면책
5	U\$200천	'18. 7. 15.	'18. 9. 13.	-	-	U\$200천	면책
계	U\$1,000천	-	-	-	U\$350천	U\$650천	-

- ☞ 약관에 의거 사고발생 통지기한은 만기일로부터 1월 이내이므로 수출자는 1번 선적건에 대해 '18. 6. 14.까지 공사 앞 서면으로 사고발생 통지를 해야 했으며, 사고통지기한 내에 사고통지하였다면, '18. 6. 15. 및 '18. 7. 15.자 선적한 수출건은 약관 제16조제3항에 의거 수입자 신용악화를 사유로 보험관계가 성립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례 ② | 변제충당*

수출자 C사는 '18. 4월 일본 수입자 D사를 상대로 단기수출보험 인수한도를 U\$200천만큼 책정 받고 아래와 같이 '18. 5월~7월 중 총 U\$300천만큼 무신용장방식으로 LED조명을 수출한 뒤 먼저 선적한 U\$200천에 대해 수출보험에 가입하고 나머지 U\$100천은 자체신용으로 처리하였다.

'18. 9. 1자로 수입자가 U\$100천만 결제하자, 수출자는 임의로 수입자 결제금을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무에 우선 충당하고 '18. 9. 10.자로 U\$200천에 대해 공사 앞 사고발생 통지하였다.

약관 제31조에 의거, 보험 가입한 건의 만기일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건의 만기일보다 우선하므로 U\$100천은 보험 가입한 건의 결제금으로 변제충당하고 수출자의 보험금청구액 U\$200천 중 U\$100천에 대해서만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구 분	선적일	만기일	수출금액	수입자 결제금		미결제 금액	비 고
				변제충당 전	변제충당 후		
1	'18. 5. 30.	'18. 6. 30.	U\$100천	-	U\$100천	-	부보
2	'18. 6. 15.	'18. 7. 15.	U\$100천	-	-	U\$100천	부보
3	'18. 6. 30.	'18. 7. 30.	U\$50천	U\$50천	-	U\$50천	미부보
4	'18. 7. 15.	'18. 8. 15.	U\$50천	U\$50천	-	U\$50천	미부보
계	-	-	U\$300천	U\$100천	U\$100천	U\$200천	-

- ☞ 약관에 의거 사고발생 통지기한은 만기일로부터 1월 이내이므로 수출자는 '18. 7. 30.까지 공사 앞 서면으로 사고발생 통지를 해야 했으나 지연되었습니다.

- 사고통지를 지연할 시 사고수입자에 대해 보험을 이용하고 있는 다른 수출자가 있는 경우 약관 제21조제3항에 의거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고발생 통지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12. 용어 정리」 참고

사례 ③ | 고지의무 위반

수출자 E사는 인도의 F사와 자동차부품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거래를 진행해오다 단기수출보험을 알게 되어 해당 수입자에 대해 단기수출보험에 가입하고 물품선적을 완료하였다.

한편, 수출자는 보험 가입 이전에 자기신용으로 수출이행한 U\$70천에 해당하는 선적건이 만기일이 지나도록 대금의 일부가 결제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사에 알리지 않은 채 인수한도를 청약하여 U\$100천의 인수한도를 책정 받았으며, 미결제건은 그 후에 결제되었으나 보험 가입건은 수입자의 지급지체로 사고발생 되었다.

- 사고조사 과정에서 인수한도 청약 시 미결제상태였던 이전 거래건의 존재가 파악되었으며, 이는 약관 제9조의 보험계약자의 중요사항 고지 의무 위반에 해당되어 공사는 약관 제8조에 의거 보험관계를 해지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 수입자의 신용도 및 결제태도와 관련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반드시 공사 앞 고지하여야 합니다.
- 약관상 공사가 서면으로 요구한 사항 및 기타 손실을 입을 우려가 있는 중요한 사실을 공사에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약서상 만기일 연장경험, 만기도래 미결제내용 등을 기재토록 하고 있는 바, 정확한 사실관계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자주하는 질문(FAQ)

Q. 단기수출보험 한도를 받았는데 이걸로 보험에 든 것인가요?

A. 한도를 부여받은 것만으로는 보험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수출통지를 하여야만 보험관계가 성립되므로, 수출통지에 누락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출통지를 한 경우에도 통지 지연, 인수한도 초과, 수출자 또는 수입자 등급 제한 등의 사유로 보험관계가 성립되지 않은 수출통지건은 반송되오니 통지건에 대한 최종 보험관계 성립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선적을 이미 완료하였는데, 단기수출보험 가입(한도책정)이 가능한가요?

A. 이미 수출물품을 선적한 후에는 단기수출보험 가입(한도책정)이 불가능합니다. 공사의 한도책정 소요시간을 감안하여 수출자는 선적 10일 이전에 보험한도를 신청(청약) 하시어 선적 전에 보험한도를 책정받으시기 바랍니다.

Q. 수입자와 오랜 기간 거래했는데 통상적으로 만기가 지난 일부 미수금이 있습니다. 이 경우 단기수출보험 청약을 하면 가능한가요?

A. 원칙적으로 해당 수입자와의 거래에서 만기가 지난 미회수금이 있는 경우에는 동 수입자에 대한 보험한도 책정이 제한됩니다.

Q. 위탁가공무역과 중계무역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공사 약관상 위탁가공무역은 국내기업의 해외현지법인이 생산, 가공한 물품 또는 국내기업이 위탁하여 외국에서 가공한 물품을 수출하는 거래입니다.

중계무역은 수출을 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통관하지 않고 제3국으로 수출하는 거래입니다. 중계무역 수출거래는 국내 산업의 발전 및 고용 창출에 기여하는 바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보험한도 책정 시 건별로 한도를 책정하는 등 일반수출 및 위탁가공무역 수출거래에 비해 제한사항이 많습니다.

Q. L/C 은행이 인수가능 은행인지 여부를 어디서 확인 가능한가요?

A. [사이버영업점 —■ 조회서비스 —■ 기업/국외은행 —■ 국외은행조회]

Q. 국별인수방침은 어디서 확인 가능한가요?

A. [사이버영업점 —■ 조회서비스 —■ 국가 —■ 국별인수방침조회]

Q. 단기수출보험을 담보로 은행에서 네고가 가능한가요?

A. 은행에 단기수출보험 보험금 청구권을 담보로 네고 가능한지 확인한 후 보험한도 신청 시 보험금 청구권 '양수인'을 '당해 외국환은행'으로 지정하여 청약하시면 됩니다.

다만 보험금 청구권이 은행에 양도된 경우에도 청구권을 제외한 기타의 권리와 의무는 보험계약자에게 있습니다.

Q. 단기수출보험료 납부일자 및 보험료, 연체료는 어디서 알 수 있나요?

A. [사이버영업점 —■ 조회서비스 —■ 보증/보험료 —■ 보험료 조회 또는 연체료 조회]

고객들이 자주하는 실수의 유형

● 수입자의 유효한 공사 신용등급이 없는 상태에서 보험한도 신청

➡ 단기수출보험(선적후)은 수입자의 신용위험을 담보하는 제도로서 보험한도 책정 시 공사의 수입자 신용등급이 유효한 상태여야 합니다. 따라서 대상 수입자의 유효등급(공사)이 없다면 보험한도 신청 전 국외기업 신용조사를 신청하여 신규 등급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국외기업 신용조사는 통상 3주의 기일이 소요되며, 현지 조사기관 사정에 의해 조사가 지연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선적 일정을 감안하여 미리 조사 신청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 물품 선적일이 임박한 상황에서 보험한도 신청

- ➡ 기본적으로 수출입자간 결제실적 및 거래구조 확인 등 심사 소요시간을 감안하여 최소 물품 선적 10일 이전에 보험을 청약(한도 신청) 하여야 합니다.
- ➡ 또한 동일 수입자와 다른 수출자(경합수출자)간 거래에서 결제기일이 지난 미결제 대금(만기도래 미결제금액)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한도책정이 제한되며 미결제 여부 및 사유 확인 등의 추가 절차로 한도 책정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물품 선적 이후에 보험한도 신청

- ➡ 보험한도의 책정은 반드시 물품 선적 이전에만 가능합니다. 만약 이번 물품 선적 이후 한도책정을 받았다면 한도책정 이후 물품 선적분부터만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한도책정만으로 보험관계가 성립되는 것으로 혼동하여 수출통지를 누락하는 경우

- ➡ 보험한도 책정이 완료되었다면 물품 선적 이후 반드시 약관 또는 특약에 명시된 기한 내 수출통지를 하여야 보험관계가 성립됩니다.
- 또한 수출통지 기한 초과, 인수한도 초과, 수출자 또는 수입자 등급 제한 등의 사유로 보험관계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는 수출통지권이 반송됩니다.

◎ 수출통지 이후 약관 및 특약에서 정한 기한까지의 보험료 미납

- ➡ 정해진 납부기일까지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에 대한 연체료가 발생합니다. 아울러 연체금 납부기일까지도 납부를 하지 않은 때에는 보험관계가 해제됩니다.

◎ 약관에 명시된 사고발생 통지 기한 미준수

- ➡ 사고발생 통지 지연건에 대하여 지급보험금에서 위약금을 차감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약관에 명시된 기한 내 사고발생 통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2. 단기수출보험(중소중견Plus+) (이하 '중소중견Plus+보험'으로 표기)

제도 개요

- ◎ 보험계약자인 수출기업은 연간 보상한도에 대한 보험료를 납부하며,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기간(1년) 중 이행(선적)한 수출거래에 대하여 선택한 담보위험으로 손실이 발생할 때 K-SURE는 연간 책임금액 범위 내에서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

☑ 단기수출보험 이용 시, 대상 수입자별 신용조사 및 한도책정, 수출건별 통지 및 보험료납부 등 일련의 절차가 필요하나, 중소중견Plus+보험 이용 시에는 **간소화된 절차 및 저렴한 보험료**로 보험 이용이 가능합니다.

☑ 단일 수입자와의 거래가 아닌 **최대 30개사 수입자와의 거래**를 일괄 담보 합니다.

☑ 담보위험의 종류와 위험별 책임금액을 고객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상품구조



* 대상수입자 등록 및 보험료 납부

담보하는 위험 및 대상거래

- ◎ 담보하는 위험 : 수입국의 비상위험 및 수입자의 신용위험
- ◎ 대상거래 : 보험계약기간(1년) 중 이행된 수출거래(일반수출, 위탁가공무역, 중계무역)
- 단, 중소기업은 결제기간 1년 이내, 중견기업은 결제기간 180일 이내 거래로 한정

이용요건 및
보험증권
유효기간

◎ 이용 요건

- 연간 수출실적 US\$50백만 이하 중소기업으로 K-SURE 수출자 신용등급 G급 이상

◎ 보험증권 유효기간: 1년

주요 계약사항

구분	중소기업	중견기업
보험계약자 (이용요건)	연간 수출실적 US\$50백만 이하 G급 이상	좌 동
	단기수출보험(포괄, 준포괄, 농수산물패키지) 이용업체는 제외	좌 동
담보위험	(기본) 수입자위험, 신용장위험 (특약) 수입국위험, 클레임위험 ¹⁾	(기본) 수입자위험, 신용장위험 (특약) 수입국위험
대상거래	일반수출, 위탁가공무역, 중계무역 (결제기간 1년 이내)	좌 동 (결제기간 180일 이내)
보험계약 대상수입자	청약 시 사전등록(최대 30개) • 신용등급 R급, 30일 이상 결제 지연 업체, 고위험 인수제한국 ²⁾ 소재 수입자 제외	좌 동
책임금액 ³⁾	• 수입자 및 신용장위험: US\$50만 이내 • 수입국위험: US\$100만 이내 • 클레임위험: US\$5만 이내	• 수입자 및 신용장위험: US\$50만 이내 • 수입국위험: US\$100만 이내
보상비율	100%	90% 이내
보험료	위험별 책임금액 x 위험별 보험요율	좌 동
기 타	• 수출통지: 없음 • 보험계약기간: 1년(매년 갱신 필요) • 보험료 납부: 가입 시 선납	좌 동

1) 클레임 해결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상

2) [홈페이지 ⇒ 정보광장 ⇒ 국별인수방침]

3) 공사가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해야 할 보험금의 최대 누적액

- ❖ 고위험 인수제한 국가('18. 9월 현재 리비아, 베네수엘라 등 10개국)에 소재한 수입자 앞 수출거래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 ❖ 기본위험(수입자 또는 신용장 위험)에 대한 책임금액은 최대 US\$50만이나 개별 수입자당 최대 보상한도는 US\$30만입니다.
- ❖ 보험가입 이전에 선적한 물품대금이 만기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날까지 결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동일 수입자에게 다시 수출한 경우에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 ❖ 중소중견Plus+보험은 보험계약기간이 1년이므로 보험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재청약하여야 보험기간의 공백 없이 보험계약 효력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이용절차

■ 보험계약 체결 단계 (수출 이행 전)

1 보험 이용 상담

▶ 보험 이용 가능 여부, 절차 등을 미리 상담(고객센터 또는 영업담당자)



2 국내기업 신용조사 및 평가(수출기업 → K-SURE)

▶ 신청서류 제출(영업부서) 및 최근 3년 재무제표 업로드(홈페이지)

서류 — 홈페이지 — 정보광장 — 신청서류 — 신용조사 관련



3 책임금액 선택 및 대상 수입자 등록 (수출기업 → K-SURE)

▶ 중소중견Plus+보험 청약서 제출(영업부서)

서류 — 홈페이지 — 보험종목 — 단기성 보험 — 단기수출보험(중소중견Plus+) — 신청서류



4 보험료 납부 및 보험계약 체결 (수출기업 → K-SURE)

▶ 보험한도 책정 시 '보험료납부통보문' 발송

▶ '보험증권'은 사이버영업점에서 직접 발급 및 조회 가능

- ☞ 선적 후 수출통지, 보험료 납부 등 절차 생략
- ☞ 대상 수입자 등록은 30개사 까지 가능
- ☞ 보험기간 중 신규 수입자 추가는 가능하나 기존 수입자 삭제는 불가



■ 대금미결제 시 보상 단계

5 사고발생 통지 (수출기업 → K-SURE)

▶ 수출대금이 결제되지 않은 경우, 결제기일로부터 1월 이내에 사고발생 통지

서류 — 홈페이지 — 정보광장 — 신청서류 — 사고접수 및 보상관련

접수 — ① 사이버영업점 사고발생 통지 등록, 또는 ② 본사 국외보상채권부 지역별 담당자 앞 서류 제출



6 사고조사 (K-SURE)

▶ 사고원인 및 수출자 귀책여부 판정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



7 보험금 청구 및 보험금 지급 (수출기업 ↔ K-SURE)

- ▶ 수출자의 귀책여부 심사 후 보험금 지급여부 결정
- ▶ 보험금 청구일로부터 1개월 이내 보험금 지급

접수 ① 사이버영업점 보험금 청구 등록, 또는 ② 본사 국외보상채권부 지역별 담당자 앞 서류 제출

❖ K-SURE가 보상판정에 필요한 서류 제출을 요구한 경우 자료제출 요청일로부터 자료 제출일까지의 기간만큼 보험금 지급기한이 연장됩니다.

제도운영예시

◎ 보험한도 책정 및 보험계약 체결

- 위험별 책임금액을 선택하여 보험 가입 신청

구 분	책임금액	보험료	비 고
기본위험 ¹⁾	수입자 위험	US\$16만	128만원
	신용장 위험	US\$4만	8만원
선택위험	수입국 위험	US\$50만	10만원
	클레임비용 위험	US\$5만	35만원
보험료 합계 ²⁾			181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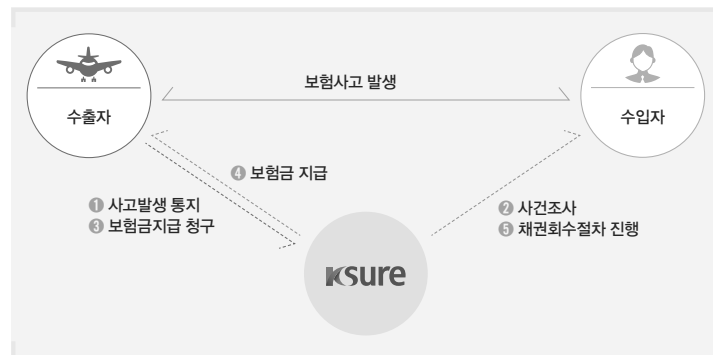
1) 최소 책임금액 US\$1만(US\$1만 단위로 추가 신청 가능)

- 수입자위험 + 신용장위험 최대 책임금액은 US\$50만으로 보험기간 중 US\$50만 이내에서 보상 가능하나, 개별수입자별 최대 보상한도는 US\$30만 이내로 제한

2) 환율 @1,000원 가정

◎ 보험사고 발생 시 보상절차

- 보험대상 수입자로 사전 등록된 수입자로부터 수출대금이 결제되지 않을 경우, 만기일로부터 1개월 이내 사고발생 통지, 사고발생 통지 후 1개월 이후 보험금 지급 청구, 보험금 지급청구일로부터 1개월 이내 보험금 지급



- ❖ 예시와 같이 보험에 가입한 경우, 무신용장 방식 수출 후 US\$20만의 대금을 결제받지 못한 경우(보험사고), K-SURE는 수입자위험 책임금액 US\$16만을 보상합니다.
- ❖ 신용장방식 수출 후 US\$20만의 대금을 결제받지 못한 경우(보험사고), K-SURE는 신용장위험 책임금액 US\$4만을 보상합니다.

보험료

◎ 선택위험별 책정후 합산

구 분	수입자위험	신용장 위험	수입국 위험	클레임 위험
보험요율	0.8%	0.2%	0.02%	0.7%

유의사항 및 주요 면책사례

◆ 유의사항

- ❖ 청약서상 보험계약 대상 수입자의 만기도래미결제여부를 정확히 기재하지 않을 시, 사고발생 후라도 약관 제9조제3항에 의거 보험관계가 해지되어 보험금을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 ❖ 보험가입 이전 선택분이 결제기일부터 30일이 경과한 날까지 미결제인 상태에서 동일 수출계약상대방에게 보험계약 효력발생일 이후 무신용장방식으로 수출한 거래에서 발생한 손실은 보상되지 않습니다.
- ❖ 보험계약 효력발생일 이후 보험계약 대상 수입자를 추가하는 경우, 공사에 정식으로 등록되기 전 수출거래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 주요 면책사례

사례 | 고지의무 위반

수출자 A사는 중국수입자 B사 앞 반도체부품을 수출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 앞 '17. 5. 1.자 중소중견Plus+보험을 청약하고 동수입자를 보험계약 대상 수입자로 통지하였다. 이후 '18. 4. 30.자 보험계약기간이 만료되었고 수출자는 '18. 5. 30.자 동일 수출보험상품을 재청약하고 동일한 수입자를 보험계약 대상 수입자로 통지하였다. 이때 수출자는 청약서상 B사의 만기도래미결제금액이 없다고 기재하였다. 수출자는 아래와 같이 수출을 이행하였으나, 수입자는 전액 결제하지 못하였고, 결국 수입자가 파산하자 수출자는 공사 앞 사고발생을 통지하였다. 보험계약이 성립된 건은 1, 3번 선적건으로 1번건은 수출자의 귀책 사항이 없어 보험금을 지급하였으나, 3번건은 수출자가 보험 재청약시 만기도래미결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기도래미결제금액이 없다고 공사 앞 잘못 고지한 바, 약관 제9조제3항에 의거 보험관계를 해지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다.

구 분	수출금액	선적일	만기일	결제금액	미결제액	비 고
1	JPY 1,300천	'18. 1. 20.	'18. 3. 20.	-	JPY 1,300천	보상
2	JPY 2,000천	'18. 5. 15.	'18. 7. 15.	-	JPY 2,000천	미부보
3	JPY 3,200천	'18. 6. 20.	'18. 8. 20.	-	JPY 3,200천	보험관계 해지
계	JPY 6,500천	-	-	-	JPY 6,500천	-

자주하는
질문(FAQ)

- 중소중견Plus+보험은 보험계약기간이 1년이므로 보험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재청약하여야 보험기간의 공백 없이 보험계약 효력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 재청약시 해당 수입자의 만기도래 미결제금액이 있다고 청약서상 기재(사전 고지)하였다면, 동 수입자는 약관 제6조에 의거 보험계약 대상 수입자에서 제외되었을 것입니다.

Q. 중소중견Plus+보험과 단기수출보험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 단기수출보험은 수입자별 신용조사 및 평가를 거쳐 보험한도를 책정받은 후 수출건별로 통지, 보험관계 성립, 보험료 납부 등의 절차가 진행됩니다.

반면, 중소중견Plus+보험은 연간 1회의 보험계약을 통해 사전 등록된 수입자(최대 30개사) 앞 수출거래에서 발생한 위험을 일괄 담보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수출거래건별 수출통지 및 보험료 납부 등의 절차가 생략되어 매우 편리합니다.

〈중소중견Plus+보험 vs 단기수출보험(선적후) 비교〉

구 분	중소중견Plus+보험	단기수출보험(선적후)
부보대상거래	보험계약 대상 수입자와의 전체 수출거래	수입자별 수출거래
국별인수방침	고위험 인수제한국가만 적용	국별인수방침 전체 적용
장점 (보험계약자)	• 낮은 보험료 부담 • 간편한 이용절차 • 위험 선택이 가능한 맞춤형 보험설계	• 수입자별 US\$30만 초과 한도책정 및 보상 가능
수출통지	생략	필요
보험료 납부	연 1회 선납	거래건별 납부 (포괄보험은 월 1회 납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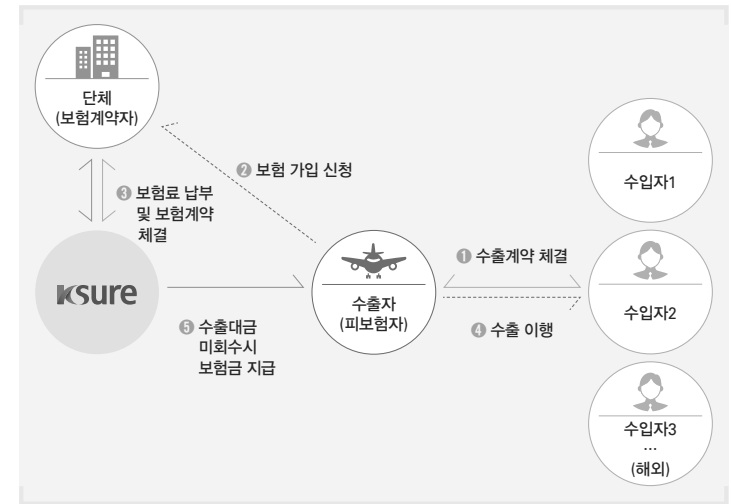
3. 단기수출보험(중소중견Plus+) 단체보험 특약(이하 '단체보험'으로 표기)

제도 개요

- 중소중견Plus+보험에 단체보험 개념을 도입, 지자체 등 지원기관 또는 단체(협회 등)가 보험계약절차를 진행하여 일괄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수출기업은 단체보험의 피보험자로서 수출대금 미회수위험 발생 시 최대 US\$5만까지 보험금을 수령하는 제도

- ✓ 수출자가 중소중견Plus+보험에 직접 가입하는 경우에 비해 단체보험 이용 시 수출자는 **보험료 부담 없이 보다 편리하게** 보험 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무역협회 단체보험의 경우에는 수출자 일부 보험료 부담 발생)

상품구조

담보하는 위험
및 대상거래

- 중소중견Plus+보험과 동일(37p 참조)

이용요건 및
보험증권
유효기간

- 이용 요건
- 연간 수출실적 US\$30백만 이하 중소·중견기업으로 공사 수출자 신용등급 G급 이상

주요 계약사항

- 보험증권 유효기간 : 1년

구 분	단체보험(중소중견Plus+)
보험계약자	협회, 수출유관기관, 지자체 등 단체
피보험자	연간 수출실적 US\$30백만 이하 G급 이상 중소중견기업 ¹⁾
보험계약 대상수입자	고위험 인수제한 국가 ²⁾ 소재 수입자 앞 수출거래 제외
책임금액 ³⁾	연간 US\$5만 이내
보상비율	중소기업 95%, 중견기업 90%
보험료	보험계약자인 단체가 납부

- 1) 단기수출보험(포괄, 준포괄, 농수산물패키지, 중소중견Plus+) 이용업체는 제외
 ⇨ 단, 단체보험 재가입 시 중소중견Plus+를 기이용 중인 경우는 가능
- 2) [홈페이지] ⇒ 정보광장 ⇒ 국별인수방침
- 3) 공사가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해야 할 보험금의 최대 누적액

이용절차



제출서류

◎ 보험 가입 시

- 가입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서류 및 제출 — ■ 보험계약자 단체 앞 문의 및 제출

◎ 사고발생 통지 및 보험금 청구

- 사고발생 통지서 및 보험금 청구서, 무신용장거래내역서, 선적서류 등

서류 — ■ 홈페이지 — ■ 정보광장 — ■ 신청서류 — ■ 사고접수 및 보상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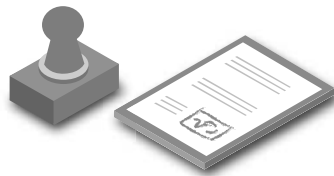
— ■ 02. 국외보상업무 — ■ 단체보험 및 수출안전망보험

☞ 수입자의 주소 및 연락처, 대표자명 기재 필수

유의사항

☞ 수출기업의 사기, 고의 및 과실은 보상대상에서 제외되며, 수출자(피보험자)가 수출계약 상대방이 무역보험 사고발생 수입자이거나 공사 신용등급 R급임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수출한 거래 등은 보상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보험계약 효력발생일 이후 고위험 인수제한국가로 수출한 경우 보상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공사가 고위험 인수제한국가를 추가로 지정한 경우에도 동일)



4. 단기수출보험(중소Plus+) 수출안전망 특약(이하 '수출안전망보험'으로 표기)

제도 개요

◎ 단체보험 대상기업을 세분화하여 연간 수출실적 US\$10만 이하 중소기업 전용으로 운영하는 제도로써 단체가 공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수출기업은 수출안전망보험의 피보험자로서 수출대금 미회수위험 발생 시 최대 US\$2만까지 보험금을 수령하는 제도

☑ 수출기업은 보험료 부담 없이 보다 편리하게 보험 이용이 가능합니다.

☑ 단체가 부담하는 보험료가 단체보험 대비 저렴하여 보험계약자(단체)는 최소 비용으로 최대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이 가능합니다.

종목 비교

〈 종목 비교 〉				
구 분	수출안전망보험	단체보험	중소중견Plus+보험	파워Plus+보험
보험 계약자	단체	단체	수출기업	수출기업
피보험자	중소기업	중소중견기업	상동	상동
수출실적	• US\$10만 이하	• US\$30백만 이하	• US\$50백만 이하	• US\$10백만 이상
수출자등급	• G급 이상	• G급 이상	• G급 이상	• F급 이상
연간 책임금액 ¹⁾	연간 US\$2만	연간 US\$5만	• US\$50만 이내 - 수입자별 US\$30만 이내	• US\$3백만 이내 - 수입자별 US\$50만 이내
대상 수입자 ²⁾	• 고위험인수제한국 소재 수입자 제외	• 고위험인수제한국 소재 수입자 제외	• 최대 30개사 이내 • 고위험인수제한국 소재, R급, 30일 이상 결제지연 수입자 제외	• 최대 30개사 이내 • 고위험인수제한국 소재, R급, 30일 이상 결제지연 수입자 제외

1) 수입자 신용위험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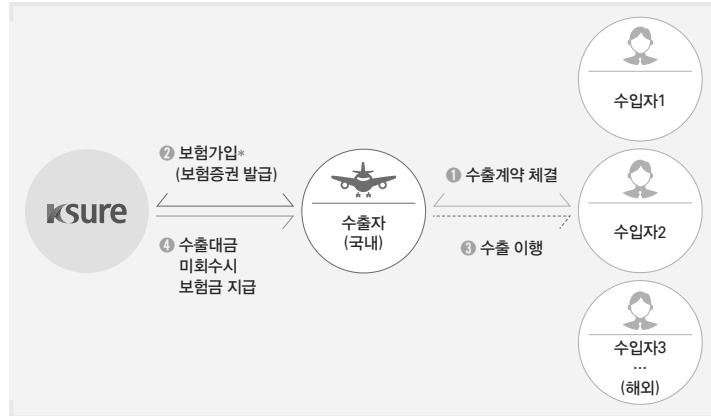
2) '18. 11월 기준 고위험인수제한국 : 가봉, 리비아, 베네수엘라, 부탄, 소말리아,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예멘, 팔레스타인, 푸에르토리코 10개국

5. 단기수출보험(농수산물패키지)

제도 개요

- 하나의 보험으로 농수산물 수출 시 발생하는 여러 위험(수출대금 미회수위험, 수입국 검역위험, 클레임비용위험)을 간편하게 보장하는 농수산물 수출기업 전용 제도

상품구조



* 대상수입자 등록 및 보험료 납부

담보하는 위험 및 대상거래

- 담보하는 위험 : 수입국의 비상위험 및 수입자의 신용위험에 따른 수출대금 미회수위험, 수입국 검역위험, 클레임비용위험
 - 비상위험 및 신용위험 : 「12. 용어 정리」 참고
 - 수입국 검역위험 : 수입국의 검역과정에서 실제 지급된 소독비용 및 폐기비용을 보상
 - (검역) 유해 농수산물의 자국내 유통을 막기 위해 수입국에서 실시하는 병충해 검사, 소독, 폐기 등 일련의 절차
 - (소독) 검역과정에서 발견된 병해충 박멸을 위해 실시하는 훈증소독(약물 처리된 증기를 쐬어 살균하는 소독방법), 열처리 소독, 약제 살포 소독 등 소독처리
 - 무역클레임 위험 : 클레임 해결에 소요된 비용을 보상
- 대상거래 : 보험계약기간(1년) 중 이행된 수출거래(일반수출, 위탁가공무역, 중계무역)
 - 단, 중소기업은 결제기간 1년 이내, 중견기업은 결제기간 180일 이내 거래로 한정
- 대상수출품목 :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임산물 및 그 가공식품

이용요건 및 보험증권 유효기간

- 이용요건
 - 중소기업 또는 신선농수산물을 생산하는 중견기업 및 대기업으로 공사 수출자 신용등급 F급 이상
- 보험증권 유효기간: 1년

주요 계약사항

구분	기본계약	선택계약	
담보위험	대금미회수위험	검역위험	클레임비용위험
책임금액*	1억원~3억원 (1백만원 단위)	1백만원~1천만원 (1백만원 단위)	1천만원~5천만원 (1천만원 단위)
보상비율	100%	100%	50~100%
수출품목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임산물 및 그 가공식품		
보험료	책임금액 × 보험요율(연 1회 선납)		
보험요율	무신용장: 2% 신용장: 0.3%	4%	0.7%
보험계약 대상 수입자	청약 시 사전등록		

* 공사가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해야 할 보험금의 최대 누적액

이용절차

- 중소중견Plus+보험과 이용절차 동일(38p 참조)

보험료

- 선택위험별 책정 후 합산

구분	기본계약 (대금미회수위험)		선택계약	
	무신용장	신용장	검역위험	클레임비용위험
보험요율	2%	0.3%	4%	0.7%

유의사항 및 주요 면책사례

◆유의사항

- 청약서상 보험계약 대상 수입자의 만기도래미결제여부를 정확히 기재하지 않을 시, 사고발생 후라도 약관 제10조제2항에 의거 보험관계가 해지되어 보험금을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 보험가입 이전 선택분이 결제기일부터 30일이 경과한 날까지 미결제인 상태에서 동일 수출계약상대방에게 보험계약 효력발생일 이후 무신용장방식으로 수출한 거래에서 발생한 손실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 보험계약 효력발생일 이후 보험계약 대상 수입자를 추가하는 경우, 공사에 정식으로 등록되기 전 수출거래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면책 사례

사례 | 보험효력발생일 이전 만기도래건의 미결제로 인한 연속수출

수출자 A사는 대만수입자 B사 앞 배치를 수출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 앞 '18. 3. 28.자 단기수출보험(농수산물패키지) 상품을 청약하며 대금미회수위험의 책임금액을 1억원으로 설정하고 동수입자를 보험계약 대상 수입자로 통지하였다.

수출자는 아래와 같이 수출을 이행하였으나, 수입자의 자금사정 악화로 대금지급이 지연되자 공사 앞 '18. 10. 10.자 사고발생 통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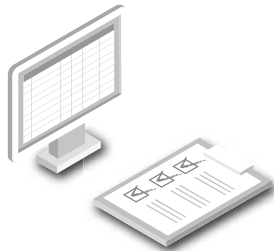
1월 선적분의 만기일은 보험효력발생일 이전에 도래하였고 결제기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18. 4. 17.까지 대금이 결제되지 않았으므로 대금이 결제된 '18. 6. 30. 전일까지의 기간동안 수출한 거래에서 발생한 손실은 보상하지 않는 손실에 해당된다.

이에 6월 선적분은 '18. 4. 18.~'18. 6. 29. 기간 중에 선적되었으므로 약관 제4조제2항에 의거 면책하고 7월 선적분에 대해서는 보험계약자 귀책이 없어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구분	수출금액	선적일	만기일	결제일	결제금액	미결제액	비고
미부분	US\$10천	'18. 1. 18.	'18. 3. 20.	'18. 6. 30.	US\$10천	-	면책
	US\$20천	'18. 1. 20.	'18. 3. 20.	'18. 6. 30.	US\$20천	-	원인건
	US\$10천	'18. 1. 22.	'18. 3. 22.	'18. 6. 30.	US\$10천	-	
-중략-							보험효력 발생일 '18. 3. 28.
부분	US\$15천	'18. 6. 23.	'18. 8. 23.	-	-	US\$15천	면책
	US\$25천	'18. 6. 25.	'18. 8. 25.	-	-	US\$25천	
	US\$12천	'18. 7. 10.	'18. 9. 10.	-	-	US\$12천	보험금 지급
	US\$10천	'18. 7. 13.	'18. 9. 13.	-	-	US\$10천	

● 보험가입 이전에 선적한 물품대금이 만기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날까지 결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계약기간 중에 동일 수입자에게 다시 수출한 경우, 이는 연속수출에 해당하며 미결제시 보상하지 않습니다.

● 상기 연속수출금지와 관련한 사항을 제외한 주요 면책사유는 31p 단기수출보험(선적후)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6. 단기수출보험(포페이팅)

제도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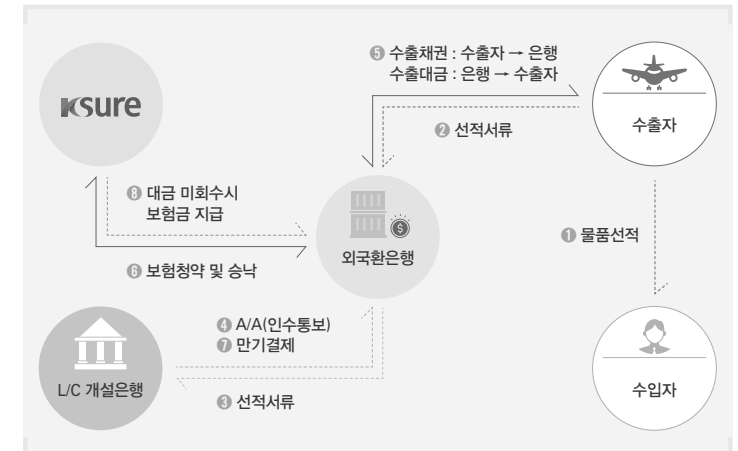
● 금융기관이 포페이팅 수출금융 취급 후 신용장 개설은행으로부터 만기에 수출대금을 회수하지 못하여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

● 단기수출보험(포페이팅)은 금융기관(보험계약자)이 신용장에 의해 보증되는 수출채권을 수출자로부터 비소구 조건으로, 인수통지서 접수 시점에 매입하는 포페이팅 거래를 대상으로 합니다.

〈 제도 비교 〉

구분	단기수출보험	수출신용보증(선적후)	포페이팅 보험
보험계약자	수출자	은행	은행
대상거래	신용장 및 무신용장 거래	신용장 거래(Usance L/C)	신용장 거래(Usance L/C)
Usance L/C 담보위험	인수거절 포함		인수거절 제외

상품구조



※ A/A(인수통보): 개설은행 만기에 대금결제를 하겠다는 약속 통보

대상거래

● 결제기간 2년 이내 일반수출, 위탁가공무역, 중계무역 수출거래

이용요건 및
운영방식

◎ 이용요건

- 수출기업 : K-SURE 신용등급 G급 이상
- 개설은행 : 순자산 US\$10백만 이상

◎ 운영방식

- 자동인수 :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으로 보험관계 성립
- 건별승낙 : 자동인수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건별승낙을 통해 보험관계 성립

〈 자동인수 요건 〉

구분	요건	비고
건당 수출금액	• 대기업 및 중견기업 US\$3백만 이하 • 중소기업 US\$1백만 이하	• 신용장금액이 아닌 포페이팅 거래건당 금액
대상거래 결제기간	• 180일 이내	
수입국	• 국별인수방침상 신용장거래 정상인수국가로서 국별신용등급 1~4등급	• 개설은행 소재국 기준
개설은행	• 순자산 US\$3억 이상	• 본점기준

주요 계약사항

구분	내용
보험계약자	금융기관
보상비율	중소기업 100%, 중견기업 975%, 대기업 95%
지급보험금	(손실액 - 면책대상손실) × 보상비율 ▷ 만기일로부터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포페이팅 약정일자(최대 2개월) 포함

이용절차

■ 보험가입 단계

① 보험 이용 상담

- ▶ 보험 이용 가능 여부, 절차 등 상담 (고객센터 또는 영업담당자)



② 국내기업 신용조사 및 평가 (수출기업 → K-SURE)

- ▶ 신청서류 제출(영업부서) 및 최근 3년 재무제표 업로드(홈페이지)
- 서류 — 홈페이지 — 정보광장 — 신청서류 — 신용조사 관련



③ 보험한도 신청 (금융기관 → K-SURE)

- ▶ 포페이팅보험 청약서 제출(사이버영업점)

신청 — 사이버영업점 — 단기 — 청약 — 포페이팅 한도신청



④ 보험한도 책정 (K-SURE → 금융기관)

- ▶ 자동인수 요건 부합 시, 자동 승인
- ▶ 자동인수 요건 미부합 시, 심사 후 건별 승낙

조회 — 사이버영업점 — 단기 — 청약 — 한도조회

- ◎ 보험한도 책정(승낙) 시가 아니라 포페이팅 실행통지 시 보험계약이 체결(보험관계 성립)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⑤ 약정 체결 (금융기관 ↔ 수출기업)

- ▶ 금융기관은 수출기업과 포페이팅 약정 체결 시, 수출기업의 귀책에 따른 수출대금 미결제의 경우 수출자에게 상환의무가 발생한다는 조항을 포함



⑥ 실행통지, 보험료 납부 및 보험계약 체결 (금융기관 → K-SURE)

- ▶ 포페이팅 거래일로부터 10영업일 내 실행통지
- ▶ 실행통지 시 보험계약 체결

통지 — 사이버영업점 — 단기 — 통지관리 — 포페이팅실행통지조회
— 등록 — 실행통지 익월 15일까지 보험료 납부



⑦ 상환통지 (금융기관 → K-SURE)

- ▶ 입금완료 시 상환통지

통지 — 사이버영업점 — 단기 — 통지관리 — 포페이팅상환통지조회
— 등록



❏ 대금미결제 시 보상 단계

8 보험금 청구 (금융기관 → K-SURE)

▶ 결제기일로부터 1월 이후, 2개월 이내에 보험금 청구 (국외보상채권부 앞 서류 제출)

서류 — 홈페이지 — 정보광장 — 신청서류 — 사고접수 및 보상관련

접수 — ① 사이버영업점 보험금 청구 등록, 또는 ② 본사 국외보상채권부 지역별 담당자 앞 서류 제출



9 보상 심사 및 보험금 지급 (K-SURE → 금융기관)

▶ 보험금 청구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 보험금 지급

❖ K-SURE가 보상판정에 필요한 서류 제출을 요구한 경우 자료제출 요청일부터 자료 제출일까지의 기간만큼 보험금 지급기한이 연장됩니다.

제도운영 예시

◎ 보험청약 승낙

- 중소기업이 대만 소재 순자산이 US\$3억 이상인 은행이 개설한 L/C(결제기간 120일)를 통해 US\$10만 거래
- 자동승낙 요건 부합으로 사이버영업점을 통해 보험청약시 자동 승낙

◎ 보험계약 체결: 포페이팅 거래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 사이버영업점을 통한 US\$10만 실행통지

구 분	책임금액	보험료	비 고
개설은행 위험	US\$10만	40만원	US\$10만 × @1,000 × 0.4%

※ 환율 @1,000원 가정

◎ 보험료 납부: 실행통지일 다음달 15일까지 보험료 40만원 납부

◎ 결제일 만기 도래 시

- 개설은행의 신용장 대금 결제가 완료되면 사이버영업점을 통해 상환등록(보험계약 종결)
- 신용장 대금이 결제되지 않을 경우, 별도의 사고발생 통지 절차 없이 만기일로부터 1개월 이후 보험금 청구

보험료

- ◎ 보험료는 포괄보험 이용기업 연 0.1%, 개별보험 이용기업 연 0.4% 수준이며, 국가등급이 양호할수록 개설은행 순자산 규모가 우량할수록 저렴

주요 면책사유



K-SURE 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4조에 의해 보험관계가 성립되었다 하더라도 보상할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1. 보험계약자에게 매입수권이 없음으로 인해 손실이 발생한 경우
2. 개설은행으로부터 인수통지서(명시적인 통지를 말하며 개설은행의 하자통보 기간의 경과로 인한 인수통지의 간주는 해당하지 않음)를 받지 않은 경우
3. 적용대상 수출거래가 제2조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4. 다음 각목의 수출자에 대하여 포페이팅 거래를 한 경우
 - 가. 수출자가 어음교환소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을 사유가 발생한 경우
 - 나. 수출자가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연체 등에 의한 신용거래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 정보” 등의 등록사유가 발생한 경우
 - 다. 수출자에 대한 파산 신청,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거나 청산에 들어간 경우
5. 제9조¹⁾를 위반하여 공사가 제14조²⁾에 의한 권리행사가 불가능한 경우



보험계약자가 제11조제1항의 보험금 청구 시기를 위반함으로 인하여 공사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공사는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1) 제9조(포페이팅 약정서) 보험계약자와 수출자간의 포페이팅 약정서에 수출자의 귀책에 따른 수출대금 미결제의 경우에는 수출자에게 상환의무가 발생한다는 조항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 2) 제14조(보험자 대위)
 - ① 공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 공사는 보험계약자의 개설은행에 대한 권리 또는 수출자에 대한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 ② 공사가 제1항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요구를 한 경우 보험계약자는 포페이팅 거래와 관련한 서류 등을 양도하는 등 공사의 권리행사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③ 공사는 제1항에 따라 취득한 권리의 행사를 보험계약자에게 위임할 수 있습니다.
 - ④ 공사가 보험금 지급전이라도 보험자 대위권 행사 등을 위하여 권리보전조치를 요청할 경우 보험계약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자주하는 질문(FAQ)

Q. 단기수출보험(포페이팅)의 주요내용은 무엇인가요?

A. 순자산 US\$10백만 이상인 은행이 개설한 Usance L/C 조건의 수출채권을 금융기관이 수출자에게 비소구조건으로 매입하는 방식의 수출금융에 대한 보험 상품으로서 개설은행의 인수(Acceptance) 계약 이후 미결제 위험을 담보합니다.

Q. L/C 은행이 인수가능 은행인지 여부를 어디서 확인하나요?

A. 사이버영업점 — 조화서비스 — 국가/은행/수입자 — 국외은행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A/A(인수통보)가 없는 상태에서 포페이팅 보험을 이용할 수 있나요?

A. 개설은행으로부터 만기에 대금결제를 하겠다는 A/A(ADVICE OF ACCEPTANCE, 인수통보)를 받아야만 이용 가능합니다.

Q. 단기수출보험(포페이팅)의 경우에도 사고발생 통지를 해야하나요?

A. 포페이팅은 별도의 사고발생 통지 없이 보험금의 청구 절차만 진행하시면 됩니다.

Q. 단기수출보험료 납부일자 및 보험료 조화는 어디서 알 수 있나요?

A. 사이버영업점 — 단기 — 보험료관리 — 보험료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체건 확인도 동일합니다.

고객들이 자주하는 실수의 유형

◎ 수출자의 유효한 공사 신용등급이 없는 상태에서의 보험청약

➡ 단기수출보험(포페이팅)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수출자 및 L/C 개설은행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이에 유효한 신용등급이 있는지 확인하신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험청약의 승낙만으로 보험계약이 성립되는 것으로 혼동하여 실행통지를 누락하는 경우

➡ 보험청약이 승낙되었다면 포페이팅 거래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보험계약이 성립됩니다.

◎ 실행통지 이후 약관에서 정한 기한까지의 보험료 미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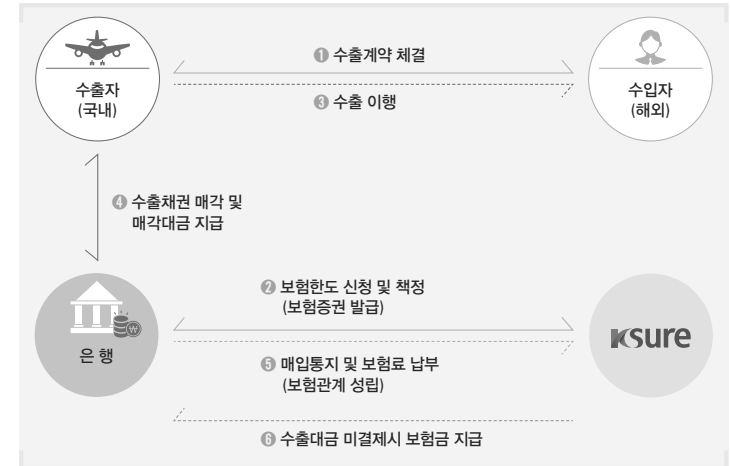
➡ 정해진 납부기일까지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에 대한 위약금이 발생합니다. 아울러 위약금의 납부기일까지도 납부를 하지 않은 때에는 공사의 별도 통지 없이 보험계약이 해제됩니다.

7. 단기수출보험(수출채권유동화)

제도 개요

◎ 은행이 수출입자간 거래에서 발생한 수출채권을 비소구조건으로 매입한 후 매입대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

상품구조



대상거래

◎ 결제기간 180일(신용장 360일) 이내 일반수출, 위탁가공무역, 재판매(중소중견기업) 수출거래

이용요건 및 보험증권 유효기간

◎ 이용요건

1) 일반수출

- 수출자: K-SURE 신용등급 C급 이상으로 연간 매출액 1,000억원 이상인 기업
- 수입자: K-SURE 신용등급 D급 이상 또는 글로벌 우량기업 및 그의 자회사

2) 재판매

- 수출자: K-SURE 신용등급 C급 이상으로 연간 매출액 1,000억원 이상인 중소 중견기업
- 수입자: K-SURE 신용등급 D급 이상 또는 글로벌 우량기업 및 그의 자회사

◎ 보험증권 유효기간: 최종 매입일(보험 부보건)로부터 1년(단, 보험 이용실적이 없는 경우는 한도책정일로부터 1년)

☑ 회전한도 보험증권의 경우 수출거래가 지속되어 보험을 계속 이용한다면 보험증권(한도) 유효기간이 계속 연장됩니다.



수출자 유동화한도 책정

- ❖ 수출신용보증(선적후), 수출신용보증(Nego), 단기수출보험(수출채권유동화) 종목의 한도 합계액(한도 해지 후 보험책임잔액 포함)
- ❖ 상기 3개 종목의 한도 합계액이 US\$1백만 이상인 경우 종목별 보험(보증)한도 이외에 별도의 수출자 유동화한도 책정 필요
- ❖ 연간 수출실적 인정분*의 1/3(중소중견기업), 1/4(대기업), 수출자별 최대 US\$10백만
- ❖ 수출자는 동일 수입자와의 거래에서 아래 종목 중복 이용 불가
 - ① 수출신용보증(선적후)
 - ② 수출신용보증(Nego)
 - ③ 단기수출보험(수출채권유동화)

[수출자 유동화한도 책정을 위한 수출실적 인정 기준]

구분	인정 기준
일반수출	수출실적의 100%
위탁가공무역	(국내 원자재 조달실적의 100%) + (기타 수출실적 x 매출총이익률)
중계무역	수출실적 x 매출총이익률

주요 계약사항

구분	내용
보험계약자	금융기관
담보위험	비상위험 및 신용위험으로 인한 수입자의 미결제 위험
대상거래	결제기간 180일(신용장 360일) 이내 일반수출, 위탁가공무역, 재판매(중소중견기업) 수출거래
보상비율	100% 이내
지급보험금	매입대금에 보상비율을 곱한 금액
이자보전특약	수출대금 만기일부터 보험금 지급시까지 발생한 약정이자를 보상받기 위해서는 보험청약 시 '이자보전특약' 선택 필요
O/A거래특약	O/A 거래(D/A 또는 D/P 거래가 아닌 무신용장방식 수출거래)는 아래 특약이 적용됨 매입은행이 채권양수자임이 추심의뢰서 등으로 나타나지 않는 O/A거래의 경우 매입은행은 아래 각호 중 어느 하나의 조치를 취하여 매입건에 대한 수입자의 결제대금이 단기수출보험(수출채권유동화) 담보부 수출채권 매입건에 최우선 상환되도록 관리한다. 1. 수입자앞 「양도통지서(Notification of Assignment)」 발송 2. 수출자에게 양도통지서를 발송토록 하고 사본 징구 3. 결제대금의 입금계좌를 매입은행 명의의 계좌로 지정 4. 결제대금의 입금계좌를 매입은행에 개설된 매입은행이 관리가능한 수출자 명의의 계좌로 지정 5. 결제대금의 입금계좌를 타행에 개설된 수출자 명의의 계좌 또는 타행계좌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수입자 결제시 매입은행이 결제대금을 관리할 수 있는 계좌로 지정

* 「12. 용어 정리」 참고

이용절차

❖ 보상한도 책정 단계 (수출/매입 전)

① 보험 이용 상담

- ▶ 보험 이용 가능 여부, 절차 등을 미리 상담(고객센터 또는 영업담당자)



② 신용조사 및 평가 (수출기업 → K-SURE)

- ▶ (수입자) K-SURE DB에 수입자정보가 없는 경우 수입자 신용조사 의뢰 (사이버영업점)
- ▶ (수출자) 신청서류 제출(영업부서) 및 최근 3년 재무제표 업로드 (홈페이지)



③ 보상한도 신청 (금융기관 → K-SURE)

- ▶ 금융기관은 매입거래에 대한 보상한도 신청

신청 — 사이버영업점 — 단기성보험 — 한도신청 — 단기수출보험(수출채권유동화) — 청약



④ [필요 시] 수출자 유동화한도 신청 (수출기업 → K-SURE)

- ▶ 수출기업의 수출신용보증(선적후), 수출신용보증(Nego), 단기수출보험(수출채권 유동화) 종목의 한도 합계액(한도 해지 후 보험책임잔액 포함)이 US\$1백만 이상인 경우 책정 필요

☞ 56p '수출자 유동화한도 책정' 참고



⑤ 보상한도 책정 및 보험증권 발급 (K-SURE → 금융기관)

- ▶ K-SURE는 수출자 및 수입자 신용도, 예상 거래규모, 결제조건 등을 고려하여 보상한도 책정



⑥ 금융계약 체결 (수출기업 ↔ 금융기관)

- ▶ 은행은 비소구조건으로 수출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며, K-SURE가 보험증권에 명기한 상환청구관련 내용이 포함되도록 수출기업과 금융계약 체결



❏ 보험관계 성립 단계 (수출/매입 후)

7 매입통지 (금융기관 → K-SURE)

- ▶ 금융기관은 수출채권 매입 후 익월 20일까지 사이버영업점에서 매입통지



8 수입자 앞 채권양도 사실 통보 (금융기관 또는 수출기업 → 수입자)

- ▶ 금융기관은 O/A 거래 매입 후 직접 또는 수출기업을 통해 수출채권 매입사실을 수입자 앞으로 통지하거나 통지토록 하고 관련자료 징구



9 보험료 납부 및 보험관계 성립 (금융기관 → K-SURE)

- ▶ 매입월 익월 10일까지 보험료 납부(보험관계 성립)



10 상환통지 (금융기관 → K-SURE)

- ▶ 매입통지건에 대한 수입자의 입금이 완료되면 공사에 상환통지(사이버영업점)
- ▶ 회전한도의 경우 상환통지시 동일거래에 대한 한도가 되살아남



❏ 대금미결제 시 보상 단계

11 사고발생 통지 및 보험금 청구 (은행 → K-SURE)

- ▶ 보험계약자는 매입대금이 결제되지 않은 경우 결제기일로부터 2월 이내에 K-SURE에 사고발생 및 보험금 청구를 서면으로 통지

서류 — ■ 홈페이지 — ■ 정보광장 — ■ 신청서류 — ■ 사고접수 및 보상관련

접수 — ■ ① 사이버영업점 사고발생 통지 등록
② 국외보상채권부 지역별 담당자 앞 서류 제출



12 사고조사 (K-SURE)

- ▶ 사고원인과 매입은행의 귀책여부 판정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



13 보상심사 및 보험금 지급 (K-SURE → 은행)

- ▶ 사고조사가 완료되면 매입은행의 귀책 여부 심사 후 보험금 지급여부 결정
- ▶ 보험금은 사고발생 통지일로부터 2개월 이내 지급

접수 — ■ ① 사이버영업점 보험금 청구 등록, 또는 ② 본사 국외보상채권부 지역별 담당자 앞 서류 제출

❖ K-SURE가 보상판정에 필요한 서류 제출을 요구한 경우 자료제출 요청일부터 자료제출일까지의 기간만큼 보험금 지급기한이 연장됩니다.

제도운영 예시

◎ 보상한도 책정 및 보험증권 발급

- 은행이 매출액이 1,000억원 이상인 C급 수출자의 D급 수입자 앞 수출거래에 대하여 보상한도 U\$20만 요청
- 은행이 사이버영업점을 통해 신청한 U\$20만 보상한도 책정 후 보험증권 발급

◎ 보험관계 성립

- 은행은 U\$10만 거래에 대한 수출채권 매입 후 매입일의 다음달 20일 사이버영업점을 통해 U\$10만 매입통지

◎ 보험료 납부

- 매입통지일 다음달 10일 보험료 납부

◎ 결제만기 도래시

- (입금시) 사이버영업점을 통해 상환등록으로 보험계약 종결
- (미입금시) 만기일로부터 2개월 이내 사고발생 통지, 이후 2개월 이내 보험금 지급(별도 보험금 청구 없음)

보험료

◎ 결제기간이 짧을수록, 수출자·수입자(신용장)의 경우 개설은행의 신용등급이 우수할수록 저렴

☑ 보험료는 가입 최소요건 충족시 평균 0.113% 수준이며, 약 0.1%~2.5% 범위에서 최종요율이 결정됩니다. 단, 수출자의 기업규모, 결제조건, 각종 할인·할증률 등에 따라 최종요율은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주요 면책사유



K-SURE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5조에 의해 보험관계가 성립되었다 하더라도 보상할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1. 적용대상 수출거래가 제2조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제2조(적용대상거래) 이 약관은 수출대금의 결제기간이 선적후, 일람후 등 기산일로부터 180일(신용장거래의 경우 360일) 이내인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수출거래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1. 국내에서 생산·가공 또는 집하된 물품(용역 포함)을 수출하는 거래
2. 국내기업의 해외현지법인이 생산·가공한 물품 또는 국내기업이 위탁하여 외국에서 가공한 물품을 수출하는 거래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이후 수출채권을 매입한 경우

가. 보험계약자의 영업점에서 수출자에게 어음교환소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을 사유가 발생한 경우

나. 보험계약자의 영업점에서 수출자에게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연체 등에 의한 신용거래정지”,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 정보” 등의 등록사유가 발생한 경우

다. 수출자에 대한 파산신청,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거나 청산에 들어간 경우

3. 보험 가입 건이 사고발생 통지 기간이 경과토록 결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동일 수입자에 대한 수출채권을 추가로 매입(무신용장 거래에 한함)한 경우



K-SURE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시킬 수 있습니다.

1. 보험계약이 K-SURE에게 책임지을 수 없는 사유로 무효·실효·해제·해지된 경우
2. 약관 제13조제3항 내지 제4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손실
3. 보험증권에 기재된 특약사항, 약관 제14조 또는 제15조의 의무이행을 태만히 함으로써 증가된 손실

자주하는
질문(FAQ)

Q. 단기수출보험(수출채권유동화)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A. 공사 신용등급 C급 이상이고 매출액 1,000억원 이상인 수출자가 공사 신용등급 D급 이상 수입자 앞 수출채권을 비소구조건으로 은행에 매각하고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 공사가 매입은행에 수출채권의 대금미회수 위험을 담보하는 제도입니다.

Q. L/C 은행이 인수가능 은행인지 여부를 어디서 확인 가능한가요?

A. [사이버영업점 — 조회서비스 — 기업/국외은행 — 국외은행조회]

Q. 단기수출보험료 납부일자 및 보험료, 연체료 조치는 어디서 알 수 있나요?

A. [사이버영업점 — 조회서비스 — 보증/보험료 — 보험료 조회 또는 연체료 조회]

Q. 매입 전 보험료를 사전에 계산해보고 싶는데 어디서 가능한가요?

A. [사이버영업점 — 단기성보험 — 보험료 — 보험료계산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정확한 보험료는 매입통지 후 보험료 조회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객들이
자주하는
실수의 유형

◎ 수출자 및 수입자의 유효한 공사 신용등급이 없는 상태에서 보상한도 신청

➡ 단기수출보험(수출채권유동화)은 수출자 및 수입자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이용가능한 보험종목이므로 한도 신청 전 반드시 유효한 신용등급 여부를 확인하시고, 필요 시 신용조사 및 평가 소요기간(국외기업은 통상 3주)을 감안하여 미리 조사 신청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 한도책정만으로 보험관계가 성립되는 것으로 혼동하여 매입통지를 누락하는 경우

➡ 한도책정이 완료되었다면 수출채권 매입 이후 반드시 약관 명시된 기한내 매입통지를 하여야 보험관계가 성립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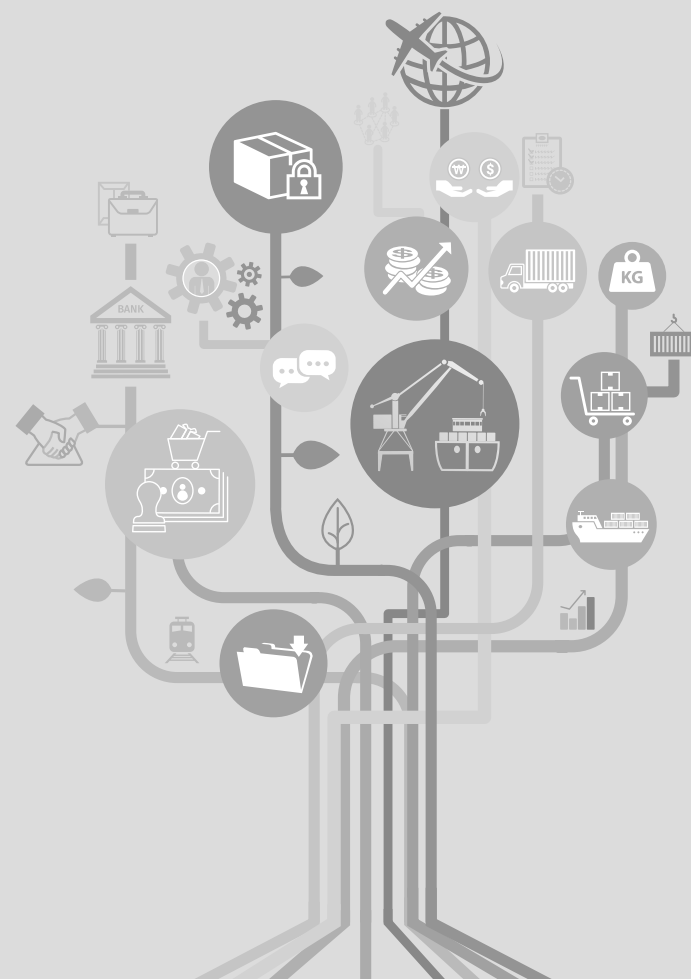
◎ 매입통지 이후 약관 및 특약에서 정한 기한까지의 보험료 미납

➡ 정해진 납부기일까지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에 대한 연체료가 발생합니다. 아울러 연체금 납부기일까지도 납부를 하지 않은 때에는 보험관계가 해제됩니다.

PART



수출신용보증



무역보험 제도안내 01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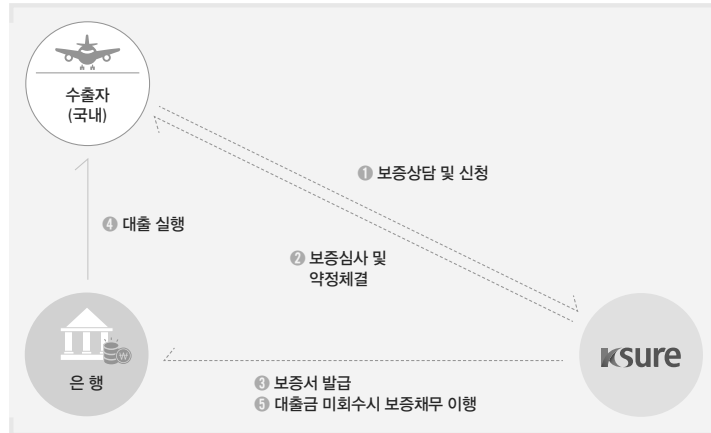
수출신용보증

1. 수출신용보증(선적전)

제도 개요

- 수출기업이 수출물품을 제조, 가공하거나 조달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으로부터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을 때 K-SURE가 연대보증하는 제도
 - 금융기관은 수출신용보증서(선적전)를 담보로 대출을 실행한 후 수출기업으로부터 대출금이 상환되지 않는 경우 K-SURE가 보상

상품구조



보증대상

금융기관이 수출기업에 대해 아래 대출자금에 해당되는 신용보증부 대출 또는 지급보증을 실행하는 경우에 적용

○ 지원 가능한 대출자금 종류

- 한국은행의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관련 무역금융지원 프로그램 운용세칙」에 의한 무역금융 및 관련 지급보증
-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취급하는 수출자금으로서 K-SURE가 인정하는 자금대출
- 한국은행의 「금융기관여신운용세칙」에서 정한 무역어음 인수
- 수출용원자재 수입신용장 개설(내국수입유선스 신용장 개설 포함) 다만, 중계무역 방식에 의한 수출용원자재 수입신용장 개설은 제외
- 기타 수출 진흥을 위한 자금대출(aT의 농식품글로벌육성지원자금, 무역협회의 무역기금 등)

이용요건 및
보증서
유효기간

- 대상기업 : 신용상 문제가 없는 수출기업
 - K-SURE 내부규정에 따른 보증금지, 보증제한 및 기타 거절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이용 제한
- 보증서 유효기간 : 1년 이내

주요 계약사항

구분	주요내용
보증계약자	금융기관
보증하는 채무	대출원금 및 보증채무 이행일까지의 약정이자
보증비율	90% 이내
보증기간 (회전보증)	1년 이내
보증약정	K-SURE와 수출자간 권리·의무관계를 약정하는 것으로,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이 약정서에 자필 서명

○ 회전보증 또는 개별보증으로 운영

- 회전보증
 - 신용보증한도와 보증기간 범위 내에서 계속 반복하여 발생하는 채무를 보증하는 방법으로, 기존 보증부대출금을 상환하면 그 금액만큼 한도가 되살아나는 방식
- 개별보증
 - 특정 수출계약 또는 특정자금과 관련하여 상환기일이 보증기간 이내 도래하도록 실행된 대출에 대하여 채무를 보증하는 방법

이용절차

■ 보증서 발급 단계

① 보증이용 상담

▶ 보증 이용 가능 여부, 절차 등 상담 (고객센터 또는 영업담당자)



② 보증신청 (수출기업 및 금융기관 → K-SURE)

▶ 신용평가 및 보증심사를 위해 보증신청서류를 준비하여 제출 (영업부서)

서류 — ■ 홈페이지 — ■ 보험종목 — ■ 신용보증 — ■ 수출신용보증(선적전) — ■ 신청서류

❖ 청약서는 기업, 신한, 하나, 국민, 우리은행(전자보증 가능)은 은행이 전자전문으로 제출하며, 그 외 은행은 수출기업이 은행의 확인을 받아 서면으로 제출합니다.



3 보증한도 책정 (K-SURE → 수출기업)

- ▶ K-SURE는 대표자와의 면담, 사업장 방문 및 보증신청기업의 신용도, 수출실적, 무역금융 이용현황, 현금흐름 등을 심사하여 보증한도 책정



4 보증약정 체결 (수출기업 → K-SURE)

- ▶ K-SURE와 수출기업간 권리·의무관계에 대한 약정 체결(대표자, 연대보증인 자필 서명 필요)

◆ 연대보증인 입보대상



개인기업

연대입보 폐지(다만, 실제경영자가 있는 경우 실제경영자 필수 입보)



법인기업

대표이사 등 실제경영자 1인(공동대표 및 각자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

⇔ 개인기업과 법인기업 모두 실제경영자가 있을 경우 실제경영자의 연대입보는 필수



5 보증료 납부 (수출기업 → K-SURE)

- ▶ “신용보증한도 × 보증요율”로 계산되는 보증료를 K-SURE에 납부



6 보증서 발급 (K-SURE → 금융기관)

- ▶ 보증료 납부 확인 후 금융기관 앞으로 보증서 발급



7 대출실행 (금융기관 → 수출기업)

- ▶ 금융기관은 보증서를 담보로 수출기업에 대출 실행 후 전자문서(전자보증 은행) 또는 사이버영업점(비전자보증 은행)을 통해 K-SURE 앞으로 대출금리 통보



❏ 보상 단계

8 사고발생 통지 (금융기관 → K-SURE)

- ▶ 신용보증 사고사유 발생시, 사고사유별 통지기한내 사고발생 통지

서류 — 홈페이지 — 정보광장 — 신청서류 — 사고접수 및 보상관련
— 수출신용보증(선적전)

접수 — ① 사이버영업점 사고발생통지 등록, 또는 ② 본사 회생관리부 국내보상팀 담당자 앞 통지(FAX 송부 후 등기우편 발송)

❖ 통지경로 : 사이버영업점

⇔ (보상/채권 ⇒ 사고통지/보험금 청구 신청 ⇒ 신청서류 스캔첨부)



9 사전구상 통보 및 채권보전 (K-SURE)

- ▶ 사전구상 통보문 발송, 채권보전 조치



10 보증채무이행 청구 (금융기관 → K-SURE)

- ▶ 사고발생 통지일로부터 20일 경과 후 보증채무 이행 청구(청구가능일로부터 2개월 이내 청구)

접수 — ① 사이버영업점 보험금 청구등록, 또는 ② 본사 회생관리부 국내보상팀 담당자 앞 서류제출



11 보상심사 (K-SURE)

- ▶ 약관 및 특약 준수 여부 검토



12 대위변제금 지급 (K-SURE → 금융기관)

- ▶ 보증채무이행 청구일로부터 1개월 이내 대위변제금 지급

❖ K-SURE가 보상판정에 필요한 서류 제출을 요구한 경우 자료제출 요청일로부터 자료제출일까지의 기간만큼 대위변제금 지급기한이 연장됩니다.

보증료

연 0.5%~2.5% 수준이며, 수출기업의 신용등급이 양호할수록 보증료 저렴

자주하는
질문(FAQ)

Q. 수출신용보증(선적전) 신청시 보증서 발급까지 어느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나요?

A. 신청 시기 담당자의 업무량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겠지만 통상 2주 정도 소요됩니다. 신규건의 경우에는 수출기업 평가 및 방문실사 등의 사유로 2주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Q. 수출신용보증(선적전) 기 이용업체인데, 한도증액이 가능한가요?

A. 통상 보증기간 만료에 따른 재보증 시 한도 증액 심사가 가능합니다. 다만 수출자의 신용등급 상황, 수출실적의 현저한 증가 등 증액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보증기간 중 증액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도매업체도 수출신용보증(선적전)을 이용할 수 있나요?

A. 보증서 발급은 도매업체 및 제조업체 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동 보증서로 해당은행에서 자금대출이 가능한지 사전에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Q. 금융거래상황확인서는 원본을 꼭 제출해야 하나요?

A. 전자금융거래확인서발급이 가능한 은행의 확인서는 제출하실 필요가 없으며, 이외 은행의 확인서는 반드시 원본 제출이 필요합니다.

Q. 연대보증인 입보기준의 '실제경영자'란 누구이며, 그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 (개인기업)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1. 기업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임원(감사 포함) 또는 간부사원(주요 부서장, 경리담당 책임자 등)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하는 자
2. 고용된 자가 아니면서 명예회장 · 회장 · 사장 · 부사장 · 전무 · 상무 · 이사 기타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법인기업)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기업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를 말합니다.

1. 대표이사, 무한책임사원
2. 최대주주(지분율 불문)
3. 지분 30% 이상 보유자
4. 배우자 및 직계존속 · 비속 합계지분 30% 이상 보유자

Q. 수출신용보증(선적전)을 취급하는 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한 이후에 대출통지를 해야 하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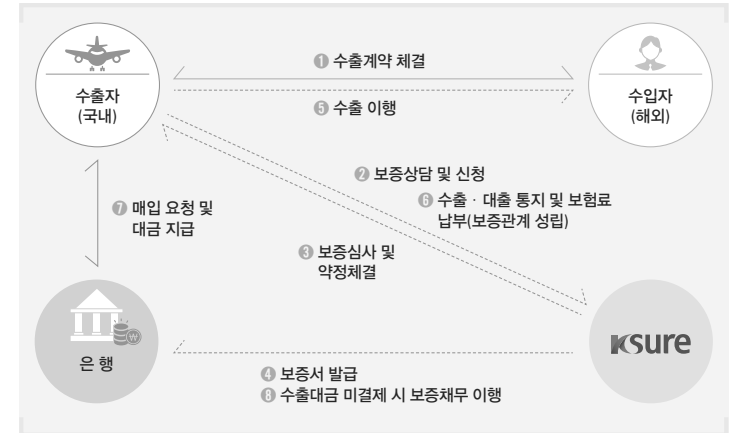
A. 수출신용보증(선적전) 취급은행에서는 약관상 ①최초 신용보증부 대출의 실행 또는 회전보증으로 실행된 경우 대출약정 체결시 및 ②신용보증조건의 변경에 따른 대출약정기간의 연장시 신용보증부 대출의 '약정이자율'을 10영업일 이내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공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2. 수출신용보증(선적후)

제도 개요

- 수출기업이 수출계약에 따라 물품을 선적한 후 금융기관이 환어음 등의 선적서류를 근거로 수출채권을 매입(NEGO)하는 경우 K-SURE가 연대보증하는 제도

상품구조



대상거래

- 결제기간 2년 이내의 일반수출 또는 위탁가공무역 수출거래

이용요건 및
보증서
유효기간

- 대상기업 : 신용상 문제가 없는 수출기업
▷ K-SURE 내부규정에 따른 보증금지, 보증제한 및 기타 거절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이용 제한
- 보증서 유효기간 : 최종 매입일(보증 이용건)로부터 1년(단, 보증 이용실적이 없는 경우는 보증서 발급일로부터 1년)
- 수출자 유동화한도 책정 : 56p 참조

☑ 수출신용보증(선적후), 수출신용보증(Nego), 단기수출보험(수출채권유동화) 종류의 한도 합계액(한도 해지 후 보험책임잔액 포함)으로 상기 3개 종류의 한도 합계액이 US\$1백만 이상인 경우 종목별 보험(보증)한도 이외에 별도의 수출자 유동화한도 책정이 필요합니다.

주요 계약사항

구분	내용
보증계약자	금융기관
보증하는 채무	대출원금에 보증비율을 곱한 금액 및 약정이자
담보위험	비상위험 및 신용위험으로 인한 수입자의 미결제 위험
대상거래	2년 이내 신용장 · 무신용장 수출거래(중계무역, 재판매거래 제외)
보증비율	중소기업 99%, 중견기업 95%
보증약정	K-SURE와 수출기업간 권리 · 의무관계를 약정하는 것으로,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이 약정서에 자필 서명
단기수출보험 가입 의무	단기수출보험 연계 가입 의무화

이용절차

❏ 보증한도 책정(보증서 발급) 단계(수출/매입 전)

① 보증이용 상담

K-SURE 방문을 통해 보증가능 여부, 이용절차 등 상담



② 신용조사 및 평가(수출기업 → K-SURE)

- ▶ (수입자) K-SURE DB에 수입자정보가 없는 경우 수입자 신용조사 의뢰 (사이버영업점)
- ▶ (수출자) 신청서류 제출(영업부서) 및 최근 3년 재무제표 업로드(홈페이지)



③ 보증신청 (수출기업 → K-SURE)

- ▶ 수출기업은 보증신청서류(금융기관 날인 필요)를 완비하여 제출



④ 보증한도 책정 (K-SURE → 금융기관)

- ▶ K-SURE는 대표자와의 면담, 보증신청기업 및 수입자 신용도, 수입자와 예상 거래규모, 결제기간 등 결제조건 등을 고려하여 수입자별 보증한도 책정



⑤ 보증약정 체결 및 보증서 발급 (수출기업 ↔ K-SURE)

- K-SURE와 수출기업간 권리 · 의무관계를 약정하는 것으로, 대표자 및 연대보증인이 약정서에 자필 서명

◆ 연대보증인 입보대상



개인기업

연대입보 폐지(다만, 실제경영자가 있는 경우 실제경영자 필수 입보)



법인기업

대표이사 등 실제경영자 1인(공동대표 및 각자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

☞ 개인기업과 법인기업 모두 실제경영자가 있을 경우 실제경영자의 연대입보는 필수



⑥ 보증서 발급 (K-SURE → 금융기관)

- ▶ K-SURE는 금융기관 앞 보증서 발급



❏ 보증관계 성립 단계 (수출/매입 후)

⑦ 선적 후 대출통지, 보증료 납부 (수출기업 → K-SURE)

- ▶ 수출기업은 수출물품을 선적한 후 사이버영업점에서 수출통지 및 대출통지
- ▶ K-SURE는 통지건에 대한 보증관계 성립
 - ☞ 반송사유 발생 시 보증관계 미성립 통지
- ▶ 수출기업은 보증료(수출신용보증 선적후) 및 보험료(연계 단기수출보험) 납부



⑧ 선적서류 매입 (금융기관 → 수출기업)

- ▶ 수출자는 보증서를 담보로 선적서류 매입 요청
- ▶ 금융기관은 보증관계 성립 및 보증료 납부 확인 후 매입



보상 단계

9 사고발생 통지 (은행 → K-SURE)

- ▶ 은행은 수출채권 결제대금이 결제되지 않은 경우 결제기일로부터 1월 이내에 K-SURE에 사고발생을 서면 등으로 통지

서류 — 홈페이지 — 정보광장 — 신청서류 — 사고접수 및 보상관련

접수 — ① 사이버영업점 사고발생 통지 등록, 또는 ② 본사 국외보상채권부 지역별 담당자 앞 서류 제출



10 사고조사 (K-SURE)

- ▶ 사고원인과 매입은행의 귀책여부 판정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



11 신용보증채무 이행 청구 및 지급 (K-SURE → 은행)

- ▶ 사고조사가 완료되면 보증부 대출 실행과정에서 은행의 귀책 여부 등 심사 후 신용보증채무 이행 여부 결정
- ▶ 신용보증채무 이행은 신용보증채무 이행 청구(통상 사고발생 통지일로부터 1월이 지난 뒤)로부터 1개월 이내 지급

❖ K-SURE가 보상판정에 필요한 서류 제출을 요구한 경우 자료제출 요청일부터 자료제출일까지의 기간만큼 대위변제금 지급기한이 연장됩니다.

보증(보험)료

- ◎ 결제기간별 수출신용보증(선적후) 보증료에 단기수출보험 보험료를 추가한 금액으로 결제기간이 짧을수록 수입자의 신용등급이 우수할수록 저렴

| 예시 무신용장 O/A 거래 | 수입자 D급, 결제기간 90일, 수출자 중소기업 및 유망기업 기준 개별보험 0.75% 및 수출신용보증(선적후) 0.13%(총 0.88%)

| 예시 신용장 거래 | 개설은행 소재국 국가등급 4등급, 결제기간 90일, 수출자 중소기업 및 유망기업 기준 개별보험 0.29% 및 수출신용보증(선적후) 0.1%(총 0.39%)

주요 면책사항

- ▶ 보증지원 대상거래가 아닌 수출거래에서 발생한 손실
 - 중계무역 또는 재판매 거래
 - 신용장방식 수출거래에서 신용장 조건과 일치하는 서류가 제시되어도 신용장 문면상 신용장 개설은행의 대금지급책임이 경감 또는 면제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용장 문면상 포함하고 있는 경우
 - 무신용장방식 수출거래에서 수입자의 대금지급책임을 경감 또는 면제한다는 내용을 약정하고 있는 경우
- ▶ 은행이 신용보증조건을 위반하여 신용보증부대출을 실행한 경우
- ▶ 은행이 수출계약 또는 신용장조건의 주요 사항을 위반하여 발행된 환어음 등을 매입하여 발생한 손실
- ▶ 은행이 NET거래에 대해 수입자의 물품수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징구하지 않고 신용보증부대출을 실행한 경우
- ▶ 기타 사항은 약관 및 면책기준 참조
[홈페이지 → 정보광장 → 보험약관 → 신용보증 → 수출신용보증(선적후) 약관, 면책기준]

자주하는 질문(FAQ)

Q. 수출신용보증(선적후) 이용 시, 반드시 단기수출보험도 함께 가입해야 하나요?

A. 수출신용보증(선적후) 청약 시 단기수출보험은 자동적으로 의무 연계 가입됩니다. 수입자의 대금미결제 위험이 발생할 경우 수출업체는 단기수출보험을 통해, 매입 은행은 선적후 보증을 통해 공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사는 은행 앞으로 대출금을 수출자를 대신하여 대위변제 하며 동시에 발생하는 수출자 앞 구상채권을 가지게 됩니다.

Q. 중계무역으로 수출신용보증(선적후)를 이용할 수 있나요?

A. 중계무역은 수출신용보증(선적후) 이용이 불가합니다. 중계무역 수출거래는 국내 산업의 발전 및 고용 창출에 기여하는 바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일반수출 및 위탁가공무역 수출거래에 비해 제한사항이 많습니다.

Q. 수출신용보증(선적후) 대출통지/수출통지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A. [사이버영업점 → 단기성보험 → 선적후보증통지등록]에서 보험증권번호 조회 후 대출통지 입력, 접수처(담당 영업부서) 선택, 저장하시면 대출 및 수출통지 등록이 됩니다. 해당 건의 보증료 및 보험료를 당일 공사에 입금하시고 담당자로부터 최종 성립 여부 확인 후 은행에 매입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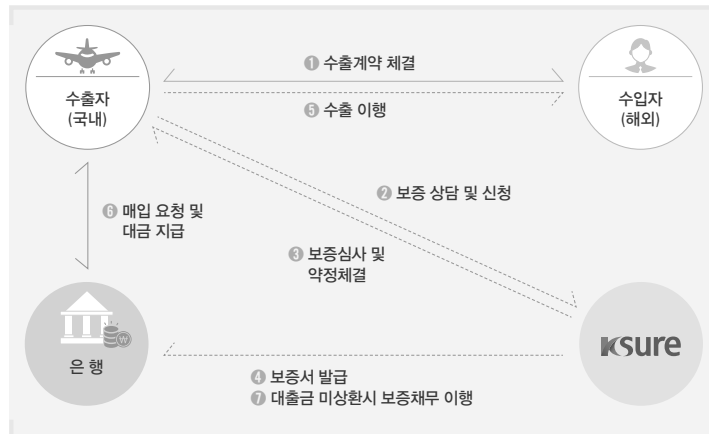
3. 수출신용보증(Nego)

제도 개요

- 수출기업이 수출계약에 따라 물품을 선적한 후 금융기관이 환어음 등의 선적서류를 근거로 수출채권을 매입(NEGO)하는 경우 K-SURE가 연대보증하는 제도

- 수출신용보증(Nego)는 수출기업의 네고를 통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서 수출신용보증(선적후)에 비해 이용절차가 간편하며 담보력을 높인 보증제도입니다.
- 수출기업은 단기수출보험 연계부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상품구조



대상거래

- 결제기간 180일 이내 무신용장(D/A, D/P 및 O/A) 방식의 일반수출, 위탁가공무역, 중계무역 수출거래

이용요건 및 보증서 유효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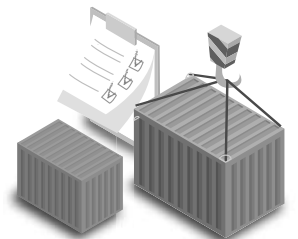
- 대상기업** : 신용상 문제가 없는 수출기업
 - ▶ K-SURE 내부규정에 따른 보증금지, 보증제한 및 기타 거절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이용 제한
- 보증서 유효기간** : 보증서 발급일로부터 1년
- 수출자 자동화한도 책정** : 56p 참조

- 수출신용보증(선적후), 수출신용보증(Nego), 단기수출보험(수출채권유동화) 중목의 한도 합계액(한도 해지 후 보험책임잔액 포함)으로 상기 3개 중목의 한도 합계액이 U\$1백만 이상인 경우 중목별 보험(보증)한도 이외에 별도의 수출자 자동화한도 책정이 필요합니다.

주요 계약사항

◆ 수출신용보증(Nego) 주요 계약사항 (수출신용보증(선적후)와 비교)

구분	수출신용보증(Nego)	수출신용보증(선적후)
보증계약자	• 금융기관	• 좌동
보증하는 채무	• 대출원금에 보증비율을 곱한 금액 및 약정이자	• 좌동
담보위험	• 비상위험 및 신용위험으로 인한 대출금 미상환 위험	• 비상위험 및 신용위험으로 인한 수입자의 미결제 위험
대상거래	• 180일 이내 무신용장 수출거래 - 재판매거래 제외	• 2년 이내 신용장 · 무신용장 수출거래 - 중계무역 및 재판매거래 제외
보증비율	• 100%	• 중소기업 99%, 중견기업 95%
보증약정	• 주채무자(수출기업)와 연대보증인이 약정서에 자필 서명	• 좌동
단기수출보험 가입 의무	• 연계 가입 선택	• 연계 가입 필수
수출자의 수출통지/매입통지 의무	• 없음 - 단기수출보험 가입 시, 수출 통지 필요	• 있음 - 금융기관의 매입 전 수출자의 수출 통지 및 대출 통지 필요
보증서 효력	• 보증기간 중 대상거래 전체	• 수출통지 및 대출통지된 수출거래
보증료	• 연 1회 선납	• 수출통지 및 대출통지 건별 납부 - 선적 후, 매입 전



이용절차

❏ 보증한도 책정(보증서 발급) 단계(수출/매입 전)

① 보증이용 상담

K-SURE 방문을 통해 보증가능 여부, 이용절차 등을 미리 상담



② 신용조사 및 평가(수출기업 → K-SURE)

- ▶ (수입자) K-SURE DB에 수입자정보가 없는 경우 수입자 신용조사 의뢰 (사이버영업점)
- ▶ (수출자) 신청서류 제출 (영업부서) 및 최근 3년 재무제표 업로드 (홈페이지)



③ 보증신청 (수출기업 → K-SURE)

수출기업은 보증신청서류(금융기관 날인 필요)를 준비하여 제출



④ 보증한도 책정 (K-SURE → 금융기관)

K-SURE는 대표자와의 면담, 수출자 및 수입자 신용도, 예상 거래규모, 결제조건 등을 고려하여 수입자별 보증한도 책정



⑤ 연간 보증료 납부, 보증약정 체결 및 보증서 발급 (수출기업 ↔ K-SURE)

- ▶ 수출기업은 보증기간(1년) 보증료 선납
- ▶ K-SURE와 수출기업간 권리·의무관계에 대한 약정 체결(대표자, 연대보증인 자필 서명 필요)
- ◆ 연대보증인 입보대상



개인기업

연대입보 폐지지만, 실제경영자가 있는 경우 실제경영자 필수 입보



법인기업

대표이사 등 실제경영자 1인(공동대표 및 각자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

☞ 개인기업과 법인기업 모두 실제경영자가 있을 경우 실제경영자의 연대입보는 필수



⑥ 보증서 발급 (K-SURE → 금융기관)

▶ K-SURE는 금융기관 앞 보증서 발급



⑦ 선적서류 매입 (금융기관 → 수출기업)

- ▶ 보증서를 담보로 금융기관이 선적서류 매입
- ☞ 별도의 수출 및 대출통지 없이 매입 건에 대한 보증관계 성립



❏ 보상 단계

⑧ 사고발생 통지 (금융기관 → K-SURE)

- ▶ 수출대금이 결제되지 않은 경우, 결제기일로부터 1월 이내에 사고발생 통지
- 서류 — 홈페이지 — 정보광장 — 신청서류 — 사고접수 및 보상관련 — 수출신용보증(Nego)
- 접수 — ① 사이버영업점 사고발생통지 등록, 또는 ② 본사 회생관리부 국내보상팀 담당자 앞 통지(FAX 송부 후 등기 우편 발송)



⑨ 사전구상 통보 및 채권보전 (K-SURE)

▶ 사전구상 통보문 발송, 채권보전 조치



⑩ 사고조사 (K-SURE)

▶ 사고원인 판정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



⑪ 보증채무이행 청구 (금융기관 → K-SURE)

- ▶ 사고발생 통지일로부터 20일 경과 후 보증채무 이행 청구(청구가능일로부터 2개월 이내 청구)
- 접수 — ① 사이버영업점 보험금 청구등록, 또는 ② 본사 회생관리부 국내보상팀 담당자 앞 서류제출



12 보상심사 (K-SURE)

▶ 약관 및 특약 준수 여부 검토



13 대위변제금 지급 (K-SURE → 금융기관)

▶ 보증채무이행 청구일로부터 1개월 이내 대위변제금 지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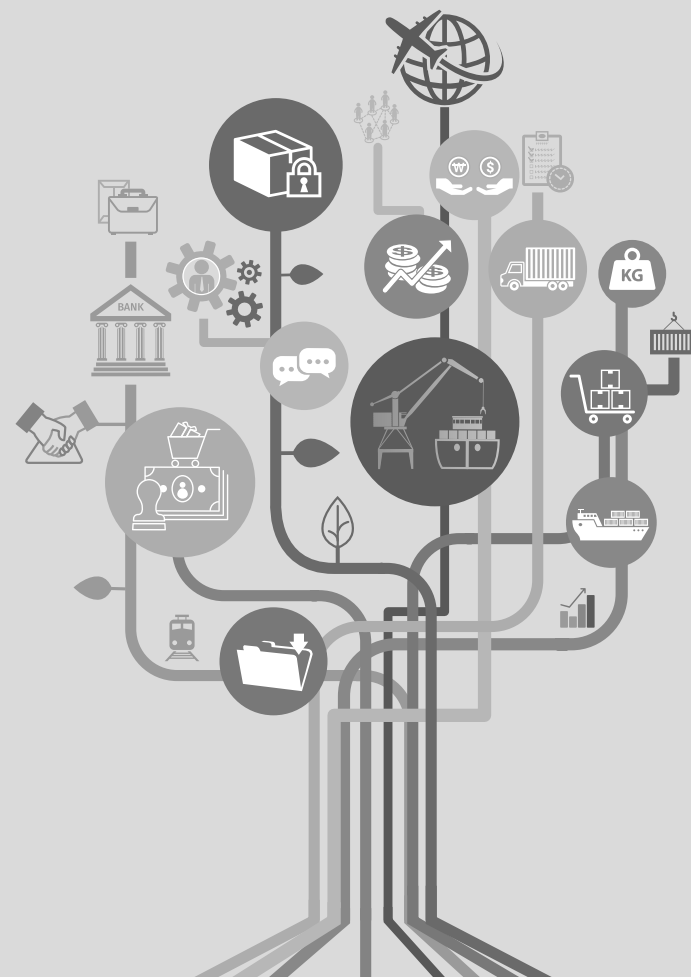
- ❖ K-SURE가 보상판정에 필요한 서류 제출을 요구한 경우 자료제출 요청일부터 자료 제출일까지의 기간만큼 대위변제금 지급기한이 연장됩니다.
- ❖ K-SURE는 보증원금과 약정이자연체이자 제외를 지급합니다. 다만, 사고통지 및 청구 지연시 지연기간 동안 발생한 미수이자액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보증료

연 0.5%~2.8% 수준이며, 수출자 및 수입자의 신용등급이 양호할수록 보증료 저렴

PART

수입보험



7

수입보험

1. 수입보험(수입자용)

제도 개요

- 수입보험(수입자용)은 주요 자원 등 지원대상 품목의 장기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국내 수입기업이 선금금 지급조건 수입거래에서 비상위험 또는 신용위험으로 인해 선금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에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

상품구조



* 보험한도 신청 전 해외 수출자 신용조사 · 평가 필요

담보하는 위험
및 대상거래

◎ 담보하는 위험

구분	내용
비상위험 (Political Risk)	해외 수출기업 국가의 전쟁, 내란, 한거래제한, 모라토리움 등으로 인해 수입을 위한 선금금을 회수하지 못할 위험
신용위험 (Commercial Risk)	해외 수출기업의 지급불능, 지급거절, 지급지체, 파산 등으로 수입을 위한 선금금을 회수하지 못할 위험

- 대상거래 : 선금금 지급 후 2년 이내에 선적하여야 하는 수입거래(중계무역 제외)

이용요건 및
보험증권
유효기간

- 대상품목 : 아래와 같은 주요 자원, 시설재, 첨단제품

- ❖ (주요자원) 철, 동, 아연, 석탄, 원유 등
☞ [홈페이지 보험종목 ⇒ 수입보험(수입자용) ⇒ 제도 개요 ⇒ '주요자원 상세조회']에서 확인
- ❖ (시설재)
 - 관세법 제95조제1항제1호의 오염물질 배출방지 · 처리물품 및 제2호의 폐기물처리 물품
 - 관세법 제95조제1항제3호의 공장자동화 물품
 - 관세법 제90조제1항제4호의 산업기술연구 · 개발용 물품
- ❖ (첨단제품) 산업발전법 제5조의 "첨단제품"(기술은 제외)
☞ 산업통상자원부 발급 '첨단제품 확인서' 필요

◎ 대상기업

- 국내 수입자 : K-SURE 신용등급 D급 이상 제조업체 또는 C급 이상 비제조업체로 공사가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 수입계약 상대방 : K-SURE 신용등급 D급 이상

◎ 보험증권 유효기간

- 최종 선금금 지급일(보험 부분건)로부터 1년(보험 이용실적이 없는 경우는 한도책정일로부터 1년)

- ☑ 회전한도 보험증권의 경우, 수입거래가 지속되어 보험을 계속 이용한다면 보험증권(한도) 유효기간은 계속 연장됩니다.

주요 계약내용

구분	내용
보험계약자	국내 수입기업
보험계약	선금금 지급액
부보율	중소기업 100%, 중견기업 97.5%, 대기업 95%
보험금액	보험계약액 × 부보율
지급보험금	(손실액 - 면책대상손실) × 부보율
보험료	보험금액 × 보험요율

◆ 수입보험(수입자용) 운영방식

- ☑ 수입보험(수입자용)은 한도를 책정 받고 건별로 보험에 가입하는 방식(한도책정방식)과 수개의 수입자를 하나의 보험으로 가입하는 Pooling 특약방식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 한도책정방식 vs Pooling 특약방식

구 분	한도책정방식	Pooling 특약방식
수입계약 상대방	K-SURE 신용등급 D급 이상의 외국기업	신용평가 없이 check list 심사를 통해 적격으로 판정된 외국기업
보험증권(한도) 유효기간	별도의 중단통보가 없는 한 기한의 제한 없이 회전방식으로 운영 ▷ 단, 한도책정 후 최종 선급금지급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경우에는 한도 소멸됨	보험증권 발행일로부터 1년
보상한도 (책임금액)	수입계약상대방의 총액한도 범위 내에서 거래실적, 신용등급, 향후거래 계획 등을 감안하여 책정	국내 수입기업이 선택 ▷ US\$20만~US\$50만 범위 내 ▷ 수입계약 상대방별 보험금 지급액은 US\$20만 이내
부보 방식	단일 수입계약 상대방과의 수입거래를 건별로 부보	다수 수입계약 상대방과의 수입거래를 단일 보험증권으로 동시 부보
선급금 지급 통지	선급금 지급 후 10 영업일 이내 선급금 지급 내역 통지 ▷ 통지건에 대한 보험관계 성립	통지 생략 ▷ 보험증권 발생 시 보험관계 성립
보험료	통지건별 납부(후납)	연간 보험료 납부(선납)

이용절차

■ 보증한도 책정(보증서 발급) 단계(수출/매입 전)

① 보험 이용 상담 (수입기업 → K-SURE)

- ▶ 보험 이용 가능 여부, 절차 등을 미리 상담 (고객센터 또는 영업담당자)
⇒ 대상품목 확인(홈페이지)



② 신용조사 및 평가(수입기업 → K-SURE)

- ▶ (해외 수출기업) K-SURE DB에 국외기업 정보가 없는 경우 신용조사 의뢰(사이버영업점)
- ▶ (국내 수입기업) 신청서류 제출(영업부서) 및 최근 3년 재무제표 업로드 (홈페이지)



③ 보험한도 신청 (수입기업 → K-SURE)

국내 수입기업은 보험신청서류를 준비하여 제출 (영업부서 앞 서류 제출)



④ 보험한도 심사 및 책정 (K-SURE → 수출기업)

K-SURE는 예상 거래규모, 결제기간, 결제방법, 해외 수출기업 신용도 등을 고려하여 보험한도 책정



⑤ 보험증권 발급 (수입기업 ↔ K-SURE)

한도 책정 시 보험증권 발송



■ 보험관계 성립 단계 (선급금 지급 후)

⑥ 선급금 지급 통지 및 보험계약 체결, 보험료 납부 (수입기업 → K-SURE)

- ▶ 선급금 지급 후 K-SURE 앞 통지(수입기업)
- ▶ 통지건에 대한 보험관계 성립(K-SURE)
- ▶ 보험료 납부(수입기업)



■ 선급금 미회수 시 보상 단계

⑦ 사고발생 통지 (수입기업 → K-SURE)

- ▶ 선급금이 회수되지 않는 경우, 선급금 환급기일로부터 1월 이내에 사고발생 통지
서류 —■ 홈페이지 —■ 정보광장 —■ 신청서류 —■ 사고접수 및 보상관련
접수 —■ 국외보상채권부 지역별 담당자 앞 서류 제출



⑧ 사고조사 (K-SURE)

- ▶ 사고원인 및 수출 · 입자 귀책여부 판정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



⑨ 보험금 청구 및 보험금 지급 (수입기업 ↔ K-SURE)

- ▶ 사고조사가 완료되고 보험금 청구(통상 사고발생 통지 후 1월이 경과한 후)가 접수되면 수입자의 귀책여부 심사 후 보험금 지급여부 결정
- ▶ 보험금 청구일로부터 2개월 이내 보험금 지급
❖ K-SURE가 보상판정에 필요한 서류 제출을 요구한 경우 자료제출 요청일부터 자료 제출일까지의 기간만큼 보험금 지급기한이 연장됩니다.

보험료

- 보험료는 결제기간이 짧을수록 해외 수출기업의 신용등급이 우수할수록 저렴
▷ 중소기업 수입자, 해외 수출기업 D급, 결제기간 60일 기준 건별 0.3%

주요 면책사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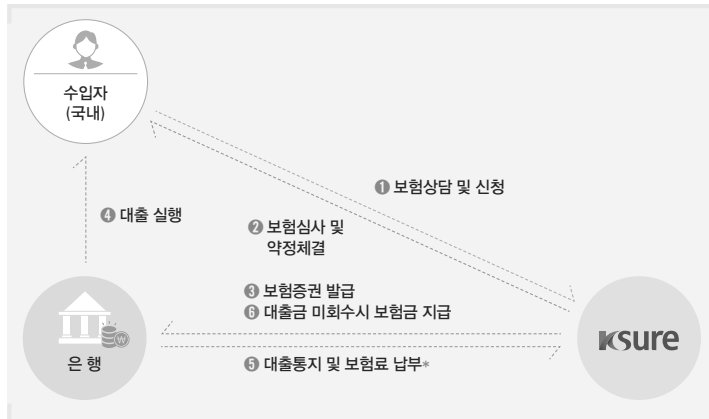
- 수입계약 상대방의 신용악화 상태에서의 추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고발생 건 선급금 지급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 기간 중 선급금 회수(환급)기일이 도래한 거래(이 보험에 들지 않은 거래 포함)의 선급금이 회수(환급)기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까지 회수(환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로 지급한 선급금은 보상되지 않음
- 수입물품이 수입보험 지원 대상 물품이 아닌 경우
- 멸실, 훼손, 나포, 물품하자 등 수입화물과 관련되어 발생한 손실 등

2. 수입보험(금융기관용)

제도 개요

- 수입보험(금융기관용)은 주요 자원 등 지원대상 품목의 장기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금융기관이 수입기업에 대상품목 수입자금을 대출(지급보증)한 후 대출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에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

상품구조



* 대출실행 건별로 통지

대상거래

금융기관이 아래 대상거래 및 품목에 대한 수입자금 대출 또는 지급보증을 실행하는 경우에 적용

- 대상거래 : 대출기간 1년 이내 수입거래(중계무역 제외)
- 대상품목 : 아래와 같은 주요 자원, 시설재, 첨단제품

- ❖ (주요자원) 철, 동, 아연, 석탄, 원유 등
 - ↳ [홈페이지 보험종목 ⇒ 수입보험(금융기관용) ⇒ 제도 개요 ⇒ '주요자원 상세조회']에서 확인
- ❖ (시설재)
 - 관세법 제95조제1항제1호의 오염물질 배출방지 · 처리물품 및 제2호의 폐기물처리 물품
 - 관세법 제95조제1항제3호의 공장자동화 물품
 - 관세법 제90조제1항제4호의 산업기술연구 · 개발용 물품
- ❖ (첨단제품) 산업발전법 제5조의 "첨단제품"(기술은 제외)
 - ↳ 산업통상자원부 발급 '첨단제품 확인서' 필요

이용요건 및
보험증권
유효기간

- 대상기업 : K-SURE 신용등급 F급 이상 수입기업
 - ▶ K-SURE 내부규정에 따른 지원금지, 제한 및 기타 거절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이용 제한
- 보험증권 유효기간 : 통상 1년

주요 계약사항

구분	내용
보험계약자	금융기관
담보하는 채무	대출원금 및 보증채무 이행일까지의 약정이자
보상비율	90% 이내
보험증권 유효기간	1년 이내
구상약정	K-SURE와 수입기업간 권리·의무관계를 약정하는 것으로,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이 약정서에 자필 서명
대출통지	금융기관이 자금을 대출(지급보증)의 경우 지급보증을 개설했 후, 대출일로부터 익월 20일까지 대출내역을 K-SURE에 통지하면, 통지간별로 보험관계 성립

이용절차

❖ 보증서 발급 단계 (수입자금 대출 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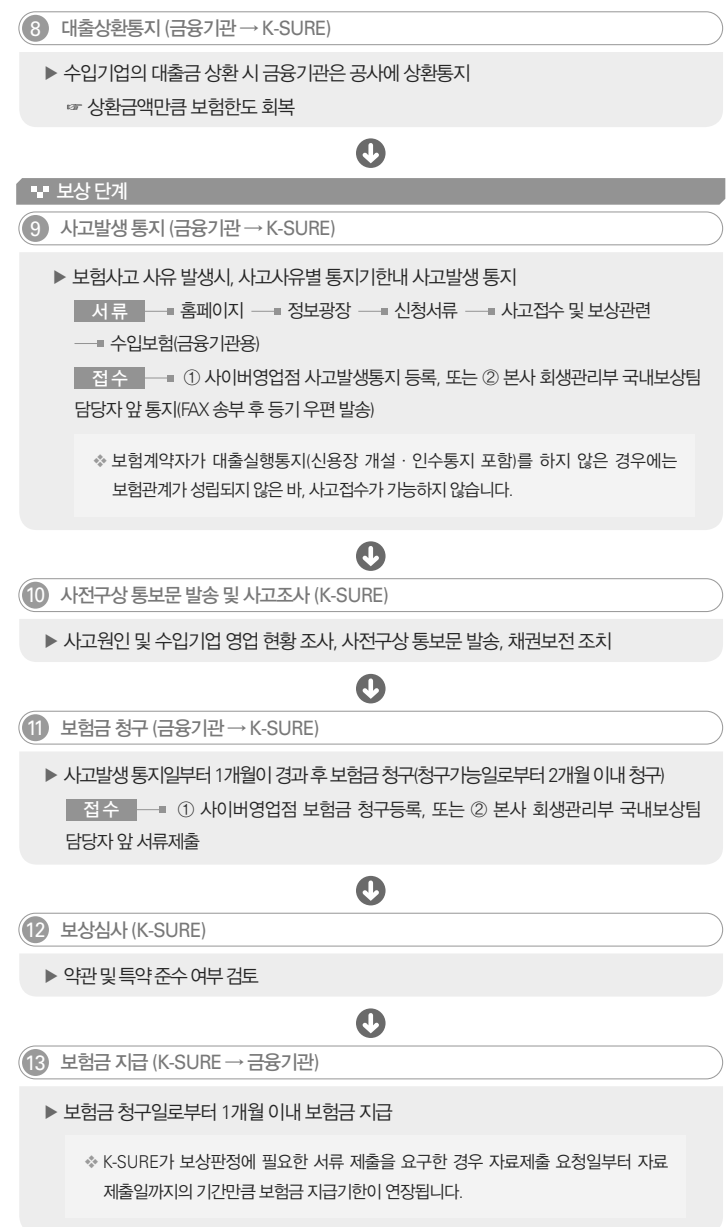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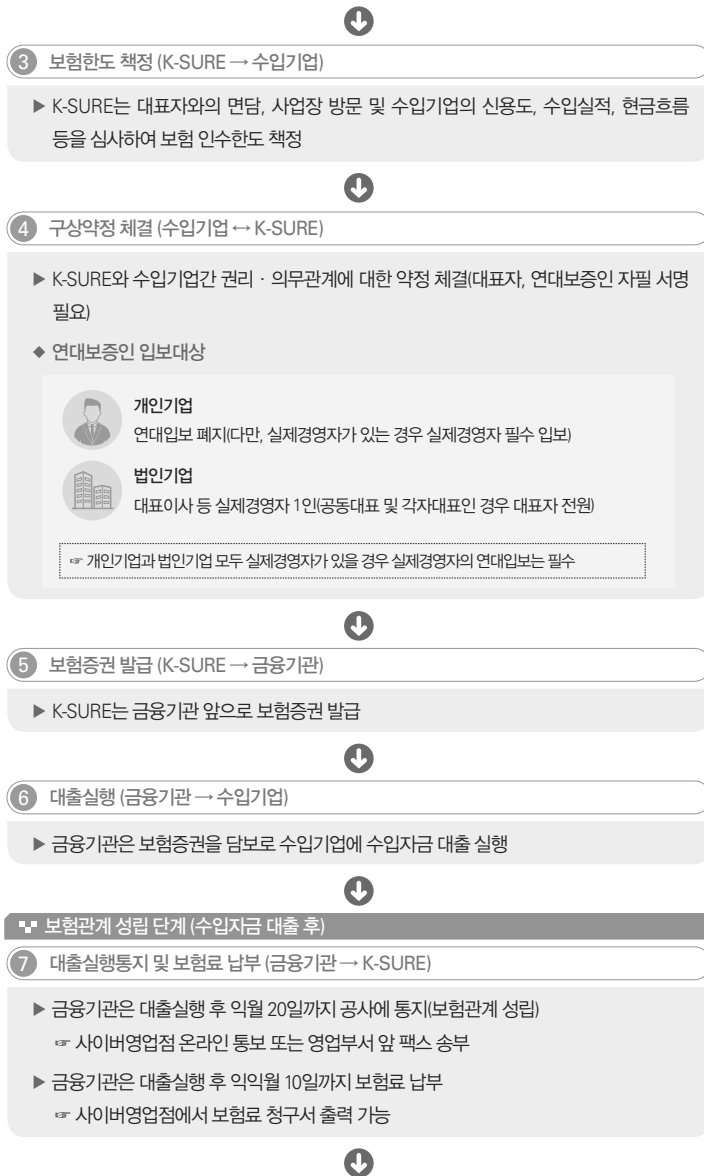
1 보험 이용 상담

- ▶ 보험 이용 가능 여부, 절차 등을 미리 상담(고객센터 또는 영업담당자)
- ↳ 대상품목 확인(홈페이지)



2 신용평가 및 보험한도 신청 (수입기업 및 금융기관 → K-SURE)

- ▶ 신용평가 및 보험심사를 위해 청약서류(금융기관 날인 필요)를 준비하여 제출(영업부서)



보험료

보험료는 1년 기준으로 0.5%~1.5%(대출 및 Usance L/C), 0.1%~0.4%(일람불 L/C) 수준이며, 수입기업의 신용등급이 양호할수록, 결제기간이 짧을수록 저렴

주요 면책사항

- 수입물품이 수입보험 지원 대상 물품이 아닌 경우
- 대출이 수입계약의 근거 내용(관련 증빙에 의한 결제금액 등, 지급보증의 경우 지급보증의 기간 및 금액 등)과 다르게 실행된 경우 등
- 직수입거래가 아닌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거래인 경우

자주하는
질문(FAQ)

Q. 중계무역도 수입보험 대상거래에 포함되나요?

A. 포함되지 않습니다.

Q. 신설업체도 수입보험을 이용할 수 있나요?

A. 결산자료에 근거하여 평가된 공사 신용등급이 F급 이상인 기업만 이용이 가능하므로 신설업체는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Q. 수입신용장방식, 송금방식, D/A, D/P 방식이 모두 수입보험 담보대상이 되나요?

A. 가능합니다. 수입신용장 발행(At Sight 조건의 경우에는 결제자금 대출 포함) 뿐만 아니라 수입관련 송금방식(사전·사후 송금), D/A, D/P방식도 보험 담보대상이 되며, 대출 취급 시에는 즉시 해외 송금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Q. 보세구역에서 반입하는 거래도 수입보험 대상거래에 포함되나요?

A. 포함되지 않습니다.

Q. 수입보험(금융기관용)에 의해 수입자금 대출실행 시, 실제 수입대금 결제시기와 관계없이 대출을 실행해도 되나요?

A. 안됩니다. 수입대금 결제용도로 대출하는 것이므로 매 대출실행시마다 수입계약서 등 관련증빙을 확인하여 실제 결제시기에 맞춰 대출을 실행해야 합니다.

Q. 수입신용장을 개설하고 보험에 부보하는 경우 수입신용장 개설만 수입보험 담보대상이 되나요? 아니면, 관련 결제자금을 대출하는 경우도 담보 대상이 되나요?

A. At Sight 조건 수입신용장의 경우에만 수입신용장 개설 및 동 수입신용장대금 결제를 위한 대출이 모두 수입보험 담보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결제자금 대출이 담보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그 이전에 해당 수입신용장이 먼저 보험관계 성립되어 있어야 합니다.

한편, Usance 수입신용장은 Usance기간 만기 시 수입신용장대금 결제를 위한 대출은 수입보험 담보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Banker's Usance의 인수금융은 수입보험 담보대상이 됩니다.

Q. 대출실행 시 대출만기일이 수입보험증권 유효기한 내에 도래해야만 되나요?

A. 보험증권 특기사항에 별도로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대출실행이 유효기한 내에 발생하기만 하면 되고, 대출만기일은 보험증권에 명시된 최장대출기간 범위 내에서 정하면 됩니다.

Q. At Sight 수입신용장 개설 후 신용장대금 결제를 위한 대출취급 시 보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A. 인수한도 범위 내에서 수입신용장 발행, 관련 결제자금대출에 대해 각각 보험 효력이 발생합니다. 수입신용장 발행 시 보험관계가 성립되고 이후 관련 결제자금 대출실행 사실을 추가로 통지하면 기존 수입신용장 발행건은 보험관계가 종료되고 관련 결제자금 대출에 대해 신규로 보험효력이 발생합니다.

Q. 수입물품과 관련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대상 품목으로 전산조회가 안 되는 경우에도 실제로는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가 있나요?

A. 지원 대상 품목으로 전산조회가 안 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이런 경우에는 유선으로 공사 담당자에게 최종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첨단제품' 해당여부는 산업통상자원부 발급 '첨단제품 확인서'로 판단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과)

Q. 수입보험 청약 시 청약서상에 보험으로 담보 받고자 하는 수입물품 HS코드를 모두 기입해야 하나요?

A. 네, 청약서에 담보 받고자 하는 수입물품 HS코드 및 품목명을 모두 기입하여 청약하셔야 합니다. 저희 공사는 보험증권에 담보대상 수입물품 HS코드 및 품목명을 명시하여 드리므로, 나중에 물품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내용변경 절차를 통해 저희 공사의 승인을 받고 보험증권을 교체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Q. 대출실행 통지시한 및 통지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 대출실행통지 시한은 대출실행(지급보증일) 익월 20일까지이며, 대출 또는 신용장 개설 시 1회의 대출통지 및 보험료 납부를 통하여 전체 대출(지급보증)기간에 대하여 보험관계가 성립됩니다.

Usance L/C의 경우 선적서류 조기인수, 개설금액의 부분 인수등의 사유로 만기일 이전

8 환변동보험

제도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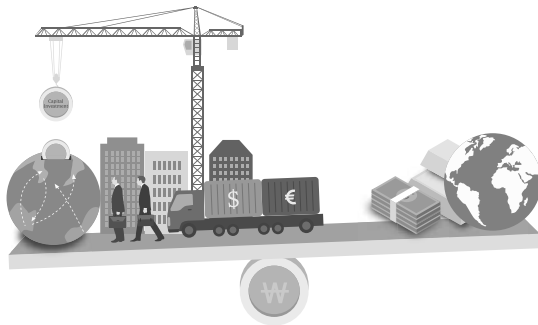
- 수출 또는 수입을 통해 외화를 획득 또는 지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차손익을 제거, 사전에 외화금액을 원화로 확정하여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을 헷지(Hedge)하는 제도
- 수출(수입)기업의 경우, 환율 하락(상승) 시 환차손에 노출되나 환변동보험을 통해 환율 하락(상승) 시 공사로부터 환차손을 보전 받게 되므로 환율 하락(상승)에 따른 위험이 상쇄됨

✓ 환변동보험은 중소기업 전용 환헤지 상품으로서 일반형, 범위선물환, 옵션형(환수금 면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K-SURE는 시중은행과 중소기업의 중개인 역할을 수행하며(보험인수 시 시중은행을 통해 전액 헷지), 환변동보험 운영에 따른 K-SURE의 이익은 없습니다.

환변동보험 상품별 안내 (수출거래 기준)

구분	내용
일반형	환율 하락 시 손실을 보상, 환율 상승 시 이익금 납부
범위선물환	일정 범위를 초과한 환율 하락 시 보상, 일정 환율 초과 상승 시 이익금 납부
완전보장 옵션형	환율 상승에 따른 이익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고, 환율 하락 시 하락분 전액 보상
부분보장 옵션형	환율 상승에 따른 이익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고, 환율 하락 시 일정수준까지 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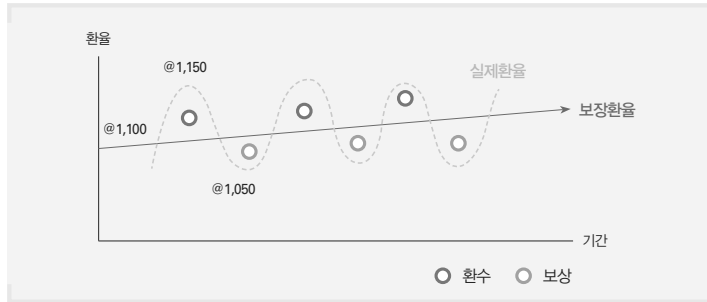


구분	일반형	범위선물환	완전보장 옵션형	부분보장 옵션형
대상기업	중소중견수출입기업	중소 중견 수출기업	중소 중견 수출기업	
대상통화	USD, JPY, EUR, CNY	USD, JPY, EUR	USD, JPY, EUR	
보장환율	청약일 평균환율 + 기간별 Swap Point		청약일 평균환율(a)(or a-10)	
결제환율	결제일 최종영업일 최초고시환율			
환율 상승시	환율상승분 전액 환수(이익금)	환수시작환율 이상 상승분 전액 환수	이익금 환수 없음	
환율 하락시	환율하락분 전액 지급(보험금)	보장시작환율 이하 하락분 전액 지급 • 보장환율 -10원 • 보장환율 -20원 • 보장환율 -30원	• 환율하락분 전액 • 환율하락분 전액 -10원	하락분의 일정 수준 (통화100엔당 최대(20~80원)까지 환차손 보상 • -70/-30, -20원~0원 • -90/-50, -40원~-10원
최대 보험기간	• 단기거래 : 1년 6개월 • 중장기거래(연속수출 계약, 해외장기공급 계약) : 3년 6개월 이내	12개월(다만, 청약일 최종영업일 또는 전영업일 청약시 최대 13개월까지 가능)	6개월(다만, 청약일 최종영업일 또는 전영업일 청약시 최대 7개월까지 가능)	
최소 청약금액	제한 없음	결제일자별 미화 1만달러, 유로화 1만 유로, 엔화 1백만 엔		
결제시점	조기결제 및 월중결제 가능	월말결제(조기결제 불가)		
손익 정산 구조				

◆ 환변동보험 특징

- 1) 최장 3년 6개월까지 환리스크 헷지 가능
 - 청약시점부터 최장 3년 6개월까지 보장환율이 제공됨에 따라 플랜트, 선박 등 장기 수출입계약건에 대한 환리스크 헷지 가능(옵션형은 3년 6개월 이내로 제한)
- 2) 저렴한 비용
 - 계약이행관련 증거금 또는 담보 제공 없이 저렴한 보험료만으로 이용 가능
 - ☞ 6개월간 US\$1백만 헷지 시 보험요율은 0.02%~0.035%(US\$200~US\$350) (옵션형은 2~3% 내외)
- 3) 자유로운 조기결제 가능
 - 수출입계약의 변경, 수출대금 조기입금, 수입대금 조기지급 등 외화자금 흐름에 따라 만기일 이전 조기결제 가능(범위선물환 및 옵션형은 조기결제 불가)
- 4) 외화자금의 실제인도가 필요 없는 차액정산방식
 - 실제 외화자금의 매매는 시중 금융기관과 이루어지며 K-SURE와는 보장환율과 결제환율 차이에 따라 발생하는 원화차액만 정산

상품구조



이용요건

- ◎ 대상기업 : 신용상 문제가 없는 국내기업
- ◎ 대상통화 : USD, JPY, EUR, CNY(범위선물환, 옵션형은 위안화 거래 불가)

이용절차

1 보험 이용 상담

- ▶ 보험 이용 가능 여부, 이용절차 등을 미리 상담(고객센터 또는 영업담당자)

2 인수한도 신청 (이용기업 → K-SURE)

- ▶ K-SURE는 이용기업의 신용도, 예상 헷지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험인수한도 책정

- ❖ 인수한도는 이용기업이 1년간 환변동보험을 이용할 수 있는 최대한도로서 인수한도 책정시에는 수수료 및 기타 의무사항이 발생되지 않음
- ❖ 인수한도 유효기간은 1년이며, 매년 재책정 필요

[인수한도 책정기준]

구분	내용
수출방식	수출실적의 최대 100% 이내에서, 기업 신용도 및 실패지수* 등을 감안하여 책정 * 연간 수출액 → 연간 수입액 → 타기관 파생상품매도액
수입방식	수입실적의 최대 90% 이내에서, 기업 신용도 및 실패지수* 등을 감안하여 책정 * 연간 수입액 → 연간 수출액 → 타기관 파생상품매수액

3 이익금 납부 약정 체결 (이용기업 ↔ K-SURE)

- ▶ 일반형, 범위선물환 이용기업이 환율변동으로 이익금이 발생할 경우 K-SURE 앞 납부를 약정하는 것으로, 대표자 및 연대보증인이 약정서에 자필 서명
- ▶ 옵션형(완전보장 및 부분보장) 이용기업은 해당사항 없음

4 보험 청약 및 보험료 납부 (이용기업 → K-SURE)

- ▶ 영업일 13시까지 사이버영업점에서 청약(가입금액 및 결제일 지정) 및 보험료 납부

- ❖ 유효계약금액은 인수한도를 초과할 수 없음
- ❖ 동일 인수한도 적용기간 중 누적 청약금액은 동인수한도의 1.3배를 넘지 못함(회전한도의 복원은 한도의 30%까지로 제한)

$$\text{청약 가능 금액} = \text{Min} \left(\begin{array}{l} \text{인수한도} - \text{미결제정산잔액} \\ \text{인수한도} \times 130\% - \text{누적청약금액} \end{array} \right)$$

※ 결제월 기준 매분기당 결제예정금액은 인수한도의 60% 이내로 제한

5 보험증권 발급 (K-SURE → 이용기업)

- ▶ 청약일 익영업일에 보험증권 발급

* 사이버영업점 청약 조회 화면에서 보험증권 조회 및 발급 가능

- ▶ 이용기업은 결제월별 보장환율 등 보험계약 내용 확인

- ❖ 보장환율은 K-SURE가 보험계약자에게 보장하는 각 결제일별 환율로, 청약일 시장평균 환율에 헤지기간별 Swap point를 더하여 결제월별로 제공되며 청약일 익일 보험증권에 기재
- ※ K-SURE가 주요 금융기관들로부터 제공받은 선물환율을 기초로 산출
- ※ 보장/조기결제 환율조회: [홈페이지] → 보험종목 → 환변동보험 → 선물환방식 or 옵션형 → 보장/조기결제환율조회]

6 결제 신청 (이용기업 → K-SURE)

- ▶ (일반형) 예정 결제일 결제(만기결제) 또는 예정 결제일 이전 결제(조기결제) 모두 가능하며, 조기결제 신청은 영업일 13시까지 사이버영업점에서 가능
- ▶ (옵셔널형) 매월말 최종영업일이 결제일자로 자동 지정(조기결제 불가능)

❖ 결제환율이란 보장환율과 비교하여 손익을 정산하는 기준이 되는 환율

[보장환율 및 결제환율 산정]

구분	산정 기준
보장환율	청약일 시장평균환율 + 해당결제일자가 속한 달의 월말기준 Swap point
결제환율	① 결제일 월말 지정 - 결제일/월말 최종영업일의 최초고시 매매기준율
(만기결제)	② 결제일 월중 지정 - 결제일 전영업일의 시장평균환율 + 월말 최종영업일까지 반대거래 Swap point
결제환율	결제신청일 시장평균환율 + 원만기 결제일이 속한달 월말기준 Swap point
(조기결제)	* 조기결제신청일과 기존 결제일자 간 1개월 이상인 경우 정산금에 잔여기간 환가환인율 적용

❖ 결제 신청은 실제 수출입 대금의 입금, 환전 또는 네고일과 관계없이 지정해도 무방



7 손익 정산 (이용기업 → K-SURE)

- ▶ (일반형) 보장환율과 결제환율 비교를 통해 손익 정산
- ▶ (옵셔널형) 보장환율과 결제환율 비교를 통해 손익 정산(결제신청일 익영업일)

❖ (보장환율 > 결제환율) K-SURE가 보험금 지급

❖ (보장환율 < 결제환율) 보험계약자가 환수금 납부(옵셔널형 해당 없음)

☞ 환변동보험 손익정산 시 실제 수출대금 수취일과 환변동보험 결제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지 않음



8 보험금 지급 또는 이익금 환수 (이용기업 → K-SURE)

- ▶ (일반형 - 보험금 발생시) 손익정산일로부터 3영업일 내 K-SURE가 이용기업에게 보험금 지급
- ▶ (일반형) 손익정산일로부터 보험금은 3영업일 내 지급, 이익금은 15영업일 내 납부
- ▶ (옵셔널형) 손익정산일로부터 3영업일 내 K-SURE가 이용기업에게 보험금 지급

보험료

- ◎ 환수금 부담이 있는 일반형은 0.02%~0.035% 수준, 환수금 부담이 없는 옵셔널형은 2%~3%* 수준으로 결제기간이 짧을수록 이용기업의 신용등급이 우수할수록 저렴

▷ (옵셔널형 보험료율) 기본요율(0.005%)에 옵션프리미엄(시장가격)으로 구성되며, 옵션프리미엄은 [공사 홈페이지 → 보험종목 → 환변동보험 → 옵셔널형 → 옵션형 보험요율]에서 매일 오전 10시 전후로 고시됨

▷ (환변동보험료 지원) 무역협회, 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수산무역협회 등에서 환변동보험에 대한 보험료 지원사업 시행 중 [공사 홈페이지 → 지원사업 → 보험료지원 참고]

제출서류

- ◎ (보험인수한도 신청 시)

- 인수한도 책정 신청서, 수출입실적증명서, 헤지수요 조사표, 파생상품 거래내역서 등

서류 — ■ 홈페이지 — ■ 보험종목 — ■ 환변동보험 — ■ 공통 — ■ 신청서류

- ◎ (보험 청약 및 조기결제 신청 시)

- 사이버영업점에서 진행(서류 제출 불필요)

자주하는
질문(FAQ)

Q. 약정의 내용은 무엇이며, 연대보증인은 누구로 정해야 하나요?

A. 모든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의 체결, 환수금 납부 및 위험고지 내용 등이 담긴 약정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개인기업은 대표자가 주채무자로서 약정을 체결하며, 원칙적으로 연대입보는 요구되지 않습니다. 법인기업은 대표자의 연대입보가 필요합니다. 단, 개인기업과 법인기업 모두 실제경영자가 있을 경우 실제경영자의 연대입보는 필수 사항입니다.

Q. 향후 수출 증가를 감안하여 인수한도를 넉넉히 책정받을 수 있나요?

A. 매년 수출실적 증가를 반영하여 인수한도를 책정합니다. 단, 거래 수출계약 체결로 한도 부족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영업부서 담당자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인수한도가 수출실적보다 다소 적게 책정되는 이유는, 외화 유입액에서 유출액을 차감한 순포지션액의 일정비율이 위험관리 차원에서 적정한 헷지비율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오버헷지 시 환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므로 경영환경을 신중히 판단하여 환변동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Q. 청약이나 조기결제 신청시간을 13:00까지로 제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K-SURE는 이용기업으로부터 환변동보험을 인수한 후, 당일 외환시장 종료 전 외국환은행과의 반대거래를 통해 환위험을 헷지하여야 하므로 이용기업의 신청시간을 13:00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용기업이 시중 외국환은행을 통한 선물환거래에서 당일 시장평균환율(Market Average Rate)로 선물환율을 책정받으자 하는 경우, 외국환은행은 신청시간을 당일 외환시장 개장전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K-SURE 환변동보험의 신청시간은 시중은행에 비해 이용기업에게 유리합니다.

Q. 보장환율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A. 보장환율은 K-SURE가 보험계약자에게 보장하는 환율(선물환율)로, 청약일 시장평균환율에 헤지기간에 따른 스왑포인트를 더하여 산정되며, 청약일 익명업일에 확인 가능합니다.

스왑포인트는 기본적으로 통화간 금리차로 결정되며, 은행(K-SURE 거래상대방)의 마진, 시장의 수요·공급, 환율전망 등에 따라 수시로 변동됩니다.

Q. 분기별 인수한도란 무엇인가요?

A. 특정 기간(분기)에 환변동보험 정산의 부담이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결제월'을 기준으로 매 분기당 결제예정금액은 연간 인수한도의 60%로 제한됩니다.

Q. 환변동보험 청약 시 청약가능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A. 연간 인수한도에서 미결제정산잔액을 차감한 금액과 연간 인수한도의 130%에서 누적청약 금액을 차감한 금액 중 적은 금액 범위 내에서 청약 가능합니다.

* 청약가능금액 = $\text{Min}[(\text{연간 인수한도} - \text{미결제정산잔액}), (\text{연간 인수한도} \times 130\% - \text{누적청약금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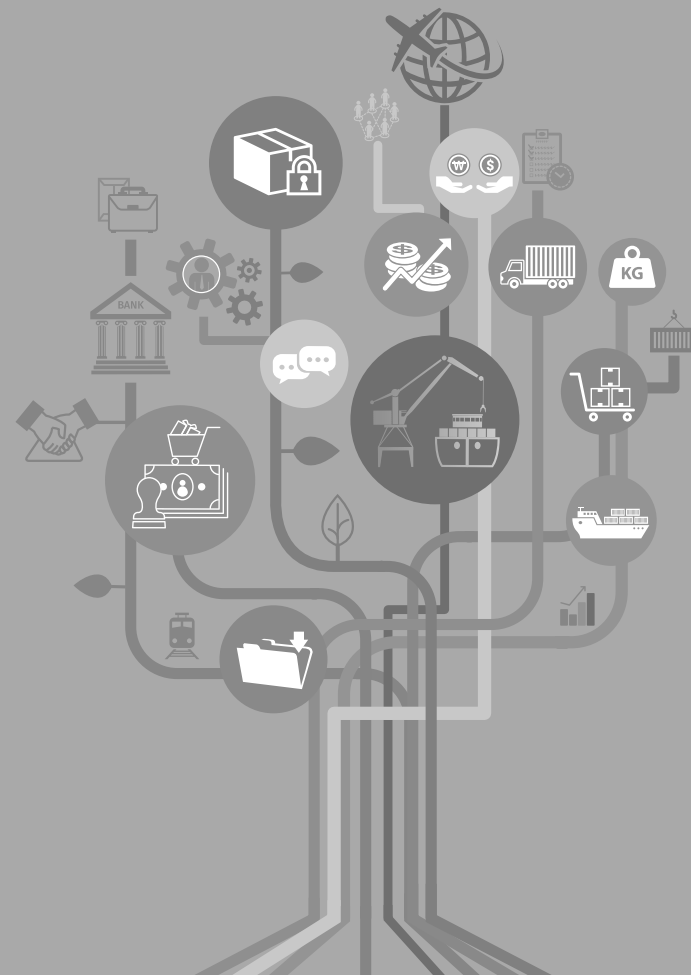
Q. 환변동보험 가입 후 금액이나 만기연장이 가능한가요?

A. 보험가입 후에는 금액 변경, 만기일 연장 등 보험계약 변경이나 해지가 불가능하므로 청약 시 유의하여야 합니다.

PART



해외채권 추심대행 서비스



9 해외채권 추심대행 서비스

제도 개요

- 수출 또는 기타 대외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수출기업 등의 해외미수채권에 대하여 K-SURE가 채권추심 권한을 위임받아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채권회수를 대행하는 서비스

◆ K-SURE 해외채권 추심업무의 강점

- ✓ 30여년간 경험 보유
- ✓ 15개의 자체 해외조직망, 34개국 82개 글로벌 상업추심기관 등과 네트워크 구축

이용대상

- 무역보험에 부보하지 않은 미회수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수출기업, 은행 등

수수료 부과기준 (성공수수료)

- ✓ K-SURE가 채권추심에 성공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용기업에게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 회수금 발생시 성공불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운영. 다만,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 진행 등 불가피한 추가비용 발생 시 사전에 동의를 받아 진행

1) K-SURE 본사 또는 국외지사를 통해 회수한 경우

회수금	US\$5만 이하	US\$5만~US\$10만	US\$10만 초과
수수료	20%	15%	10%

* 구간별 누적적으로 적용

(예: 회수금이 US\$12만인 경우, (US\$5만 × 20%) + (US\$5만 × 15%) + (US\$2만 × 10%) = US\$19,500)

2) 채권추심기관을 통해 회수한 경우

$$\text{수수료} = \text{채권추심기관 수수료 (10~20% 내외로 회수금액 및 기관별 차등)} + \text{공사 수수료(4\%)}$$

이용절차

1 서비스 이용 상담 (이용기업 → K-SURE)

공사 홈페이지(해외 미수채권 상담신청)를 통해 담당부서(국외채권팀) 앞 서비스 이용가능 여부 확인

상담신청 — 홈페이지 — 지원사업 — 중소기업 우대 제도



2 채권추심 신청 (이용기업 → K-SURE)

채권추심위임장,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신청서류를 완비하여 제출

▷ K-SURE는 접수 통보 및 수수료 안내 공문 발송

서류 — 홈페이지 — 지원사업 — 중소기업 우대 제도 — 신청서류

제출 — 국외채권팀 앞 서류 제출



3 채권자 위임확인서 제출 (이용기업 → K-SURE)

K-SURE 요청에 따라 이용기업은 채권자 위임확인서 제출



4 채권추심 활동 착수 및 진행상황 안내 (K-SURE → 이용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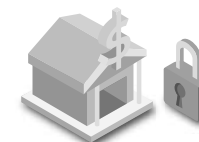
K-SURE는 전세계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추심활동을 진행하며, 진행경과는 사이버 영업점에서 실시간 조회 가능

▷ 단, 일반적 추심절차 외에 법적 절차가 필요한 경우 채권자와 사전 협의 후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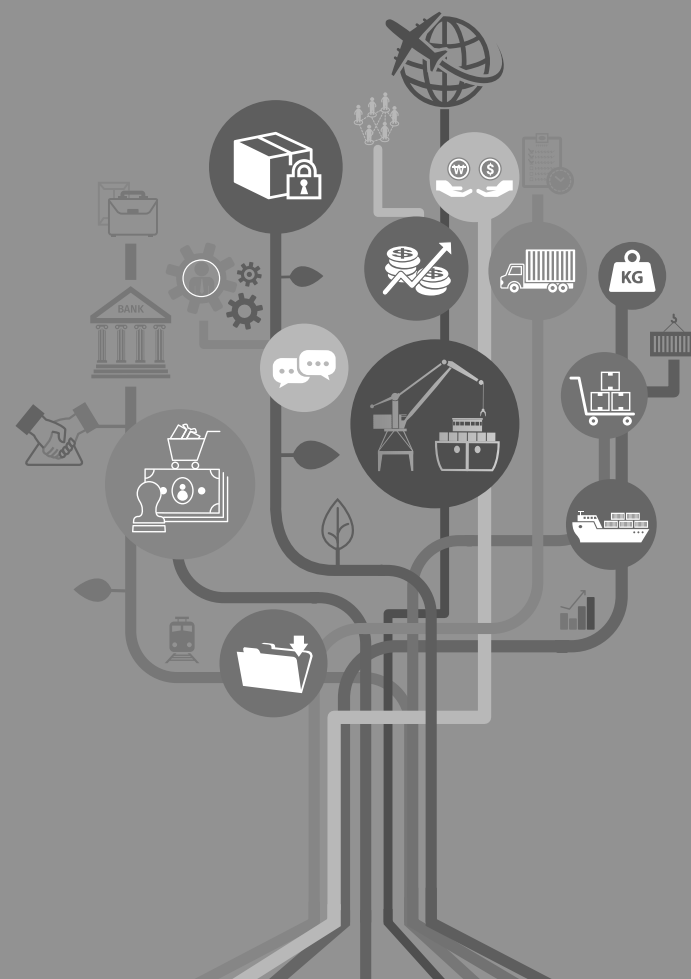
5 채권추심 서비스 종결 (이용기업 → K-SURE)

채권추심 성공 시 성공수수료 정산 후 채권자 계좌에 회수금 송금



10

PART

중소중견기업
우대 제도

무역보험 제도안내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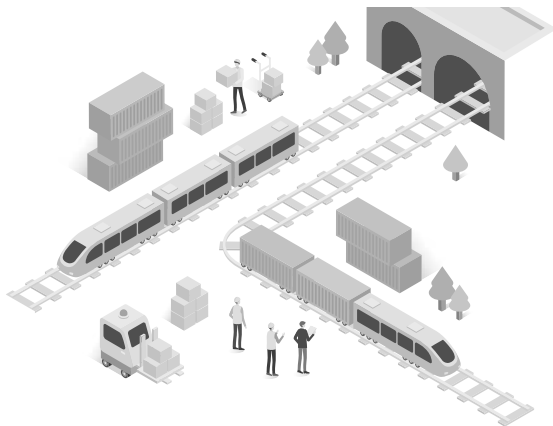
10

중소중견기업 우대 제도

중소중견기업
전용 종목 운영

◎ K-SURE는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중소중견기업 전용 종목 운영

구분	내용
단기수출보험	중소중견 Plus+보험 • 보험기간(1년) 중 이행된 다수의 수입자 앞 수출거래에 대하여 공사가 책임금액 범위 내에서 수출대금 미회수로 인한 손실 보상
	단체보험 • 지자체, 협회 등 단체가 회원사를 피보험자로 하여 중소중견 Plus+보험에 가입
	수출 안전망 보험 • 연간 수출실적 US\$10만 이하 수출 중소기업 전용 상품 • 지자체, 협회 등 단체가 회원사를 피보험자로 하여 중소중견 Plus+보험에 가입
	준포괄 보험제도 • 중소중견기업이 3개 이상의 수입자 앞 전체 수출거래를 보험에 부보하는 제도로써 개별보험 대비 보험료 할인 혜택 제공
	농수산물 패키지 보험 • 농수산물 수출 시 발생하는 대금미회수위험, 수입국 검역위험, 클레임 비용위험 등 담보위험별 책임금액을 선택하여 연간 단위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사고 발생시 공사가 책임금액 범위 내에서 보상
수출신용보증	선적전 • 수출기업의 수출이행자금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공사가 무역금융 등 은행의 대출금 상환 보증
	선적후 • 선적 후 대금회수시까지 수출기업의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공사가 은행의 수출채권 매입대금 회수 보증
환변동보험	- • 수출 또는 수입을 통해 외화를 획득 또는 지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차손익을 제거, 사전에 외화금액을 원화로 확정하여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을 헷지(Hedge)하는 제도

중소중견기업
우대 혜택

◎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보험·보증료 할인, 부보율 우대 등 지원책을 시행 중이며, 특히 유망중소중견기업, 창업, 벤처, 수출초보기업 등에 대해 추가 우대혜택 제공

◆ 유망중소중견기업

- ☑ 혁신형 중소기업(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경영혁신기업)
- ☑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지정 수출유망중소기업
- ☑ 산업통상자원부 지정 세계일류상품 인증기업
- ☑ KOTRA 지정 글로벌브랜드사업 선정기업, U턴 기업 등

◆ 성장단계별 맞춤형 무역보험 지원

❖ 수출 창업 및 벤처 기업을 활성화하고,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촉진하며, 수출 초보 기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우대 지원 시행

구분	대상 기업	우대 혜택
수출 희망 기업	• (창업기업) 업력 7년 이내 기업	• 수출신용보증(선적전) 신규 한도 책정 (개별보증 한도 최대 1.5억원 이내), 보증료 할인(최대 30% 이내)
	• (벤처기업) 벤처기업 확인서를 통해 확인된 벤처기업	• 단기수출보험(선적후) 한도 우대(최대 1.5배 이내), 보험료 할인(최대 50% 이내)
수출 초보 기업	• (내수 중소중견기업) 최근 1년 수출실적 50만불 이하인 기업	• 수출신용보증(선적전) 신규 한도 책정 (수출실적에 따라 최대 1.5억원 이내), 보증료 할인(최대 20% 이내)
	• 최근 1년 수출실적이 100만불 이하 중소기업 (중견기업은 200만불 이하)	• 수출신용보증(선적후) 한도 우대(최대 1.5배 이내), 보증료 할인(최대 30% 이내) • 단기수출보험(선적후, 중소중견 Plus+, 농수산물 패키지) 보험료 할인(최대 50% 이내)
시행기간	• '19. 8. 31. 까지	

K-SURE 컨설팅 사업 (무료)

- 현장 근무경력이 풍부한 K-SURE 전문가가 공사 업무와 관련된 수출채권 관리, 환위험 관리, 수출금융 조달 등 분야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하여 중소중견 수출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서비스

〈 컨설팅 분야 〉

구분	내용
무역 보험	수출금융 조달 - 무역금융 및 매입외환 등 Trade Finance 활용방안 - Loan Portfolio 안정성 및 유동성 관리
	수출채권 관리 - 거래수입자 신용위험 관리 및 클레임 등 무역분쟁 관리기법 - 수출계약 · 결제조건 분석 및 대금미회수위험 관리
	환위험 관리 - 환위험 헤지 방안 * 채권채무 상계 등 내부적 관리기법 및 파생상품 거래 등 외부적 관리기법 - 환율동향 및 전망
	무역보험 활용방안 - 수입자 신용조사, 보상 및 해외 채권 추심 - 대금 미회수위험 관리 및 수출관련 금융 조달을 위한 보험제도 활용방안
기타	금융 정책자금 안내, 환위험관리, 금융 및 보증기관 안내
	수출입 원산지 증명, 수출판로 개척, 수출계약, FTA 활용
	법 무 상사분쟁, 법률자문, 무역클레임, 특허권, 상사분쟁
	회계(세무) 조세법령 검토, 회계감사 자문, 세법 검토

- 수수료 : 무료

- 이용절차

신청 — 홈페이지 — 지원사업 — 중소중견 특별지원 — K-SURE 컨설팅 — 신청하기



무역보험 아카데미(무료)

- 사업 개요 : 무역보험 제도 및 이용방법, 무역실무, 자금조달 등 무역기업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무료 교육서비스

- 연간 교육일정표 확인 및 수강 신청 : 홈페이지 — 무역보험아카데미 — 교육신청

환위험 관리 서비스(무료)

- 환율정보 일일문자 및 월간전망 메일링 서비스 : 수출기업의 환리스크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일일환율정보 문자 서비스 및 월간 환율전망 메일링 서비스 실시

신청 — 홈페이지 — 정보광장 — 환율동향 — 일일문자서비스

- 환위험관리 상담 : 온라인 또는 방문을 통한 CEO 방문상담 실시

신청 — 홈페이지 — 고객참여방 — 상담신청 및 애로접수 — 환위험관리 상담신청

- 환위험관리 지원센터 : 수출 중소기업의 환위험 관리를 위한 일일 환율정보, 월간 환율전망, 환변동보험 제도안내 등 종합 정보 제공

신청 — 홈페이지 — 환위험관리 지원센터(<https://www.ksure.or.kr/fx/index.do>)

일일 문자서비스 샘플

| K-SURE 환율전망 국내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과 네고물량에 주목하며 1,030원선 테스트 전망 |

- ❖ 전일 정부의 강력한 경기부양 의지 표명에 따라 강화된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상승압력 가할 것으로 예상
- ❖ 8거래일 연속 이어진 외국인 주식순매수 및 월말 앞둔 네고물량 유입으로 상단이 제한될 것으로 보이면서 1,030원선 테스트할 전망
- ❖ 무보 · 대한상의 · 외환은행 환설명회(7.29. 오전) 신청 : 무보 홈페이지 ⇒ 공지사항

❖ 전일종가

- 원/달러 : 1,028.6원(+4.9원)
- 원/100엔 : 1,010.12원(+1.40원)
- 원/유로 : 1,384.51원(+6.19원)

❖ 역외환율(NDF) : 1,032.5원(+2.35원)

❖ 금일 원/달러 환율 예상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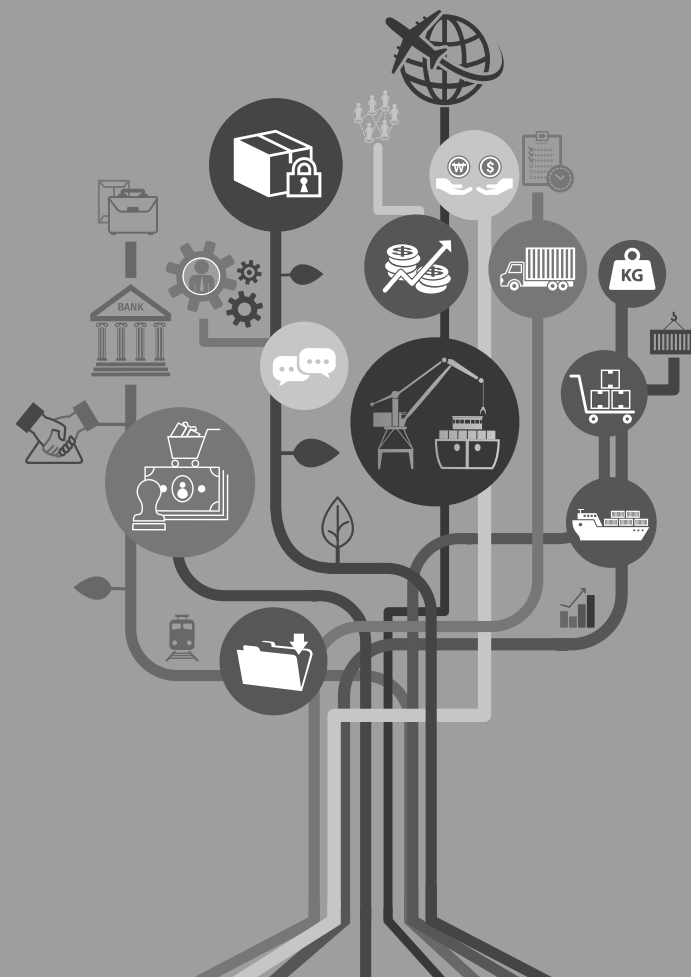
- 1,026.76 ~ 1,034.32(금융기관 예상치 평균)

※ 무역보험공사 환위험관리팀(aaa@ksure.or.kr)

- [신청](#) — [홈페이지](#) — [정보광장](#) — [뉴스레터 신청하기](#)

PART

보험(보증)료 지원사업 안내



11

보험(보증)로 지원사업 안내

보험(보증)로
지원사업 개요

◎ 각 지자체, 유관기관 및 협회 등에서는 중소기업의 수출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K-SURE의 무역보험을 이용할 경우 보험(보증)로 지원

◎ 지원 해당여부 및 혜택수준 등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보험료지원)를 참고하시거나 K-SURE 고객센터(1588-3884) 또는 각 영업부서 앞 문의

(단위: 백만원, 개사)

구분	지원기관명	단기 수출 보험	단기 수출 보험	수출 신용 보증	한 변동 보증	지원대상	'18년 지원 예산	'17년 지원 업체수
지 자 체	서울특별시	○	○	○		서울 소재 수출실적 1천/3천/5천만원 이하 중소기업	500	802
	경기도	○	○	○	○	경기도 소재 수출실적 5백/2천/3천만원 이하 중소기업	600	3,991
	수원시	○	○	○		수원시 소재 중소기업(제조업)	30	56
	안양시	○	○	○		안양시 소재 수출실적 3천만원 이하 중소기업	29	49
	성남시	○	○	○		성남시 소재 중소기업(국세, 지방세 납부확인)	50	신규
	안성시	○	○	○		안성시 소재 중소기업	30	신규
	용인시	○	○	○		용인시 소재 중소기업(제조업)	30	신규
	오산시	○	○	○		오산시 소재 중소기업	20	신규
	인천광역시	○	○	○	○	인천 소재(본사/공장) 전년도 수출실적 1천만원 이하 중소기업	80	126
	천안시	○	○	○	○	천안시 소재 전년도 수출실적 1천만원 이하 중소제조기업	50	58
	아산시		○			아산시 소재 전년도 수출실적 1천만원 이하 중소제조기업	10	신규
	충청북도	○	○	○	○	충북 소재 중소기업 (연 수출 5천만원, 매출 1,500억 이하)	300	295
	청주시	○		○	○	청주시 소재 수출 중소기업	20	13
	충주시	○		○	○	충주시 소재 수출 중소기업	7	9
	충청남도	○	○	○	○	충남 소재 전년도 수출실적 1천만원 미만 중소기업	120	144
	대전광역시	○	○	○	○	대전 소재 중소기업	100	100
	세종특별자치시	○	○	○	○	세종시 소재 중소제조기업	20	10
	대구광역시	○	○	○	○	대구 소재 중소기업 (수출신고필증상 제조지가 대구)	250	293

'18년도
보험(보증)로
지원기관 및
지원내용

지 자 체	경상북도	○	○	○	○	경북 소재 수출 중소기업	220	213
	경산시	○	○	○	○	경산시 소재 수출 중소기업	20	54
	김천시	○		○	○	김천시 소재 수출 중소제조기업	15	7
	경상남도	○	○		○	경남 소재(본사/사업장) 중소기업	320	292
	창원시	○	○		○	창원 소재(본사) 중소기업	40	80
	김해시	○	○		○	김해 소재(본사) 중소기업	20	37
	밀양시	○	○	○	○	밀양 소재(본사/사업장) 중소기업	10	16
	진주시	○			○	진주 소재(본사/사업장) 중소기업	10	16
	전라북도	○	○	○	○	전북 소재 매출액 1,000억 미만 수출 중소기업	230	247
	전라남도	○	○	○	○	전남 소재 전년도 수출실적 2천만원 미만 중소중견기업	130	84
	광주광역시	○	○	○	○	광주 소재 전년도 수출실적 2천만원 미만 중소중견기업	130	80
	울산광역시	○	○	○	○	울산 소재 수출 중소기업	135	98
	울주군	○	○	○	○	울주군 소재 수출 중소기업	20	29
공공 기관	부산광역시	○	○	○	○	(보험료) 부산 소재 연간 수출실적 2천만원 이하 중소기업 (보증료) 조선기자재, 자동차 부품업체*	600	476
	양산시	○	○			양산지역 소재 수출 중소기업	20	신규
	강원도	○	○	○	○	강원 소재 전년도 수출실적 3천만원 이하 중소기업	25	48
	원주시	○		○	○	원주 소재 전년도 수출실적 3천만원 이하 수출 중소기업	10	8
	춘천시	○	○	○	○	춘천 소재 수출 중소기업	10	7
	제주특별자치도	○	○	○	○	제주도 소재 수출 중소중견기업	180	70
	한국농수산식품 유통공사	○	○		○	농식품 수출업체	1,740	152
	한국서부발전	○	○	○	○	서부발전이 확인한 협력사	63	30
	중소기업 진흥공단		○			GMD 사업 참여업체	16	71
	한국수산물협회	○	○	○	○	수산업체(수출, 가공, 생산 등)	784	66
협회 · 단체	한국무역협회		○		○	전년도 수출실적 5백/3천만원 이하 회비납입 중소중견기업*	225	781
	신림조합중앙회	○			○	신림조합중앙회가 확인업체	50	4
	엑스포트클럽 에이스		○			서울 소재 전년도 수출실적 3천만원 이하 중소기업	3.3	15
	울산상공회의소	○				울산상공회의소 회비납입회원사	3.4	13
	중소기업중앙회 대구경북지역본부		○			대구경북소재 수출실적 10만원 이하 업체	1.6	72
	신한은행		○			코트라 신규수출기업화사업체	80	999
금융 기관	기업은행		○			전년도 수출실적 3천만원 이하 중소중견기업	452.3	226
	우리은행				○	협업중	80	-

12 용어 정리

1 건별한도	부보율
하나 또는 수개의 수출계약서(또는 신용장) 건별로 부여되는 일회성 한도 (중계무역 수출거래 또는 국별인수방침에 따른 건별승낙국가 앞 수출거래 등에 적용)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금을 산정하기 위하여 손실액에 곱하여야 할 보상비율 (약관 또는 계약내용에 따라 K-SURE가 정함)
2 고위험 인수제한국	11 비상위험(political risk)
'18. 11월 기준 고위험 인수제한국가는 10개국(가봉, 리비아, 베네수엘라, 부탄, 소말리아,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예멘, 팔레스타인, 푸에르토리코)이며, [홈페이지] ⇒ 정보광장 ⇒ 국별인수방침에서 확인 가능	수입국의 전쟁, 내란, 환거래 제한, 모라토리움 등으로 인해 수출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위험
3 개별보증	12 수출자 유동화한도
특정 수출계약 또는 특정자금과 관련하여 상환기일이 보증기간 이내 도래하도록 실행된 대출에 대하여 채무를 보증하는 방법	수출신용보증(선적후), 수출신용보증(Nego), 단기수출보험(수출채권유동화) 종목의 한도 합계액(한도 해지 후 보험책임잔액 포함)으로 상기 3개 종목의 한도 합계액이 U\$1백만 이상인 경우 종목별 보험(보증)한도 이외에 별도의 수출자 유동화한도 책정 필요
4 개별보험	13 신용위험(commercial risk)
수출자와 특정 수입자와의 거래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위험을 평가, 수출보험에 가입하는 방식	수입자의 지급불능, 지급거절, 지급지체, 파산 등으로 수출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위험
5 변제충당	14 위탁가공무역
수출자와 수입자 사이에 결제기일이 다른 수개의 채무가 있는 경우, 수입자가 지급하는 결제대금은 결제기일(결제기일이 연장된 경우 최초의 결제기일) 도래 순으로 결제된 것으로 간주하는 약관 규정 ☞ 수개의 채무 중 수입자가 일부결제를 하고 수출입자간 특정건에 대한 대금지급임을 합의한다 하더라도, K-SURE와 보험계약자 사이에는 만기일이 먼저 도래한 건이 결제된 것으로 간주	국내기업의 해외현지법인이 생산 · 가공한 물품 또는 국내기업이 위탁하여 외국에서 가공한 물품을 수출하는 거래
6 보상한도	15 약정이자
보험금 지급(보상)이 가능한 최대 한도. 동일한 수출입자간 거래에 대하여 공사가 보상할 수 있는 보험금의 최대 누적액	대출 상환기일에 적용되는 이자율에 의한 이자액(연체 이자율 및 신용가산이자율 제외)
7 보험가액	16 인수한도
보험사고 발생시의 경제적 손실(수출보험에서는 통상 수출금액)	보험계약 체결(인수)이 가능한 최대 한도. 수출자가 특정 수입자와의 수출거래와 관련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최대 한도
8 보험금액	17 일반수출
보험자(K-SURE)가 지급할 수 있는 최대 보상한도금액	국내에서 외국으로의 수출을 말하며, 국내에서 생산 · 가공 또는 집하된 물품을 수출하는 거래 (우리나라 선박에 의하여 외국에서 채취 또는 포획한 수산물물 수출하는 거래 포함)
9 보험료	18 잠정보상한도
보험요율은 수입자 신용등급(L/C거래인 경우 개설은행 소재 국가등급), 결제기간 등에 따라 결정	단기수출보험 포괄 또는 조포괄 특약체결 업체에 한해 보상한도가 책정되지 않은 경우 한도 책정 시기까지 잠정적으로 적용하는 한도로서 신용장방식 U\$40만, 무신용장 U\$20만 적용(단, 국별인수방침상 제한이 있는 경우, 선적 당시 수입자 등급이 G, R급 이거나 L/C은행이 인수부적격인 경우는 적용 배제)

부서 안내



고객센터 전 화
1588-3884



고객센터 팩 스
02-6234-1407



홈페이지
www.ksure.or.kr



사이버영업점
https://cyber.ksure.or.kr



01	고객센터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4(서린동) 한국무역보험공사	F 02)6234-1407
02	중앙지사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4(서린동) 한국무역보험공사	F 02)6234-1411
03	강남지사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511(삼성동) 트레이드타워 1304호	F 02)6234-1421
04	구로디지털지사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32길 29(구로동) 카코스벤처센터 1402호	F 02)6234-1432
05	경기남부지사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107(이악동)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8층	F 02)6234-1433
06	경기북부지사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1181(장항동) 교보생명빌딩 8층	F 02)6234-1434
07	인천지사	인천광역시 연수구 갯벌로12(송도동) 미추홀타워 본관 13층	F 02)6234-1429
08	대전세종 충남지사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136(월평동) 대전무역회관 8층	F 02)6234-1435
09	충북지사	충북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50(가경동) 충북기업진흥원 4층	F 02)6234-1436
10	강원지사	강원 원주시 원일로2(인동) 삼성생명빌딩 6층	F 02)6234-1437
11	부산지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APEC로30(우동) 벡스코 제2전시장 3층	F 02)6234-1440
12	대구경북지사	대구광역시 동구 동대구로489(신천동) 대구무역회관 10층	F 02)6234-1441
13	울산지사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로197(달동) 유안타증권빌딩 10층	F 02)6234-1442
14	경남지사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257(용호동) 경남무역회관 5층	F 02)6234-1443
15	전북지사	전북 전주시 완산구 온고일로1(서신동) 한국교직원공제회 5층	F 02)6234-1439
16	광주전남지사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225(대인동) 광주은행본점 10층	F 02)6234-1438
17	제주지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473(이도2동 390) 경제통상진흥원 4층	F 02)6234-1444
18	시화출장소	경기도 시흥시 산기대하로237(정왕동) 시흥비즈니스센터 8층	F 02)6234-1445
19	천안출장소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불당14로 48(불당동) NH농협은행 천안시지부 3층	F 02)6234-1446
20	해양금융부	부산 남구 문현금융로40(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제21층 2101호	F 02)6234-1414
21	회생관리부 (국내보상팀)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4(서린동) 한국무역보험공사	F 02)6234-1419
	국외보상채권부		
22	(아시아, 미주, 유럽아프리카 보상팀)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4(서린동) 한국무역보험공사	F 02)6234-1417~8

무역보험 제도안내 01

발 행 일	2018년 12월
발 행 처	한국무역보험공사
기 획	한국무역보험공사 CS전략팀
주 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4(서린동)
홈페이지	www.ksure.or.kr
고객센터	1588-3884

고객의 소리에 귀기울이겠습니다!

K-SURE의 제도나 서비스에 대한 불만, 제안, 칭찬, 문의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아래 경로를 통해 공사에 알려주세요.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K-SURE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홈페이지 (고객참여방 - 고객의 소리)
- 사이버영업점 (고객센터 - 고객의 소리)
- 고객센터 (1588-3884)

- 본 책자는 한국무역보험공사 기금으로 제작되었으며 사전승인 없이 무단 전재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이 안내서는 무역보험 관련 정보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그 완전성 및 법률적 책임이 항상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특정사안에 대한 의견 제시가 아니므로 개별사안에 대한 공사 앞 구체적 문의 없이, 이 안내서 상의 내용만을 적용하여
발생한 결과에 대해서는 한국무역보험공사가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